

본권

National R&D Innovation Act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3. 0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3년 1월 기준)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2. 12. 11	2022. 6. 10., 일부개정	법률 제188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 12. 11	2022. 12.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1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2. 12. 16	2022. 12. 1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 이 매뉴얼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관한 기존 안내자료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이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바에 따릅니다.

<b>제1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b> .....	<b>1</b>
제1절 개요 .....	3
1. 배경 .....	3
2. 구성 .....	4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
4.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5
제2절 주요 용어 .....	18
제3절 적용 범위 .....	32
제4절 주체별 책임과 역할 .....	40
제5절 경과 조치 .....	42
<b>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b> .....	<b>45</b>
제1절 기획 및 예고 .....	47
1. 사전기획 .....	47
2. 예고 및 공모 .....	49
제2절 사전검토 및 선정 .....	53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	60
1.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	60
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65
제4절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및 보고 .....	80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	80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고 .....	88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	91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91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98
제6절 기술료 징수·납부·사용 .....	103
1. 기술료 개요 .....	103
2.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 .....	106
제7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110
제8절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활용 .....	122
제9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	125
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125
2.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작성·기록·관리 .....	135
제10절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140
1. 연구윤리 확보 .....	140
2.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	143
3. 제재처분 .....	146
<b>제3장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b>	<b>155</b>
제1절 연구개발비의 구성·지급·이관 .....	157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163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167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178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188

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191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193
제8절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205
제9절 보안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209
제10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211
제11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213
제12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215
제13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	221
제14절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	228
제15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	230
제16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237
제17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239
제18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241
제19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	244
<b>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관리 시스템 .....</b>	<b>247</b>
제1절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	249
제2절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	253
<b>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지원 .....</b>	<b>263</b>
제1절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	265

제2절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	269
참고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 .....	277
참고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	281
참고3.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	283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	287
부록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서식 .....	385
부록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411
부록4. 매뉴얼 기준 서식 .....	423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	467
《별권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별권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별권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 표 목차

〈표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훈령, 고시) ……	4
〈표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구조도 ……	5
〈표 1-3〉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되고 혁신법으로 이관된 조항 ……	8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과 혁신법 및 시행령 간 관계 ……	9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혁신법 시행규칙 간 관계 ……	11
〈표 1-6〉 혁신법 제정에 따른 행정규칙 변화 ……	11
〈표 1-7〉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적용 법률 ……	12
〈표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한 법률 예시 ……	13
〈표 1-9〉 연구기관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 예시 ……	14
〈표 1-10〉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구성 ……	16
〈표 1-11〉 사업 유형별-절차별 적용법률 ……	34
〈표 1-12〉 혁신법과 보조금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 (적용법률 표시) ……	36
〈표 2-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제척기준 ……	56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예시 ……	57
〈표 2-3〉 선정평가 평가항목 ……	57
〈표 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	67
〈표 2-5〉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약/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	70
〈표 2-6〉 연구 수행과정 평가지표 예시 ……	83
〈표 2-7〉 특별평가 실시 사유 ……	85

〈표 2-8〉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93
〈표 2-9〉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 .....	95
〈표 2-10〉 지식재산권의 포기 검토 절차 .....	99
〈표 2-11〉 추적조사 세부내용 예시 .....	100
〈표 2-12〉 기술료 관련 용어 .....	105
〈표 2-13〉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	123
〈표 2-14〉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127
〈표 2-15〉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요건 .....	128
〈표 2-16〉 제재처분의 사유 .....	149
〈표 2-17〉 제재처분의 절차 .....	150
〈표 3-1〉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	157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158
〈표 3-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	159
〈표 3-4〉 연구개발비의 이관 방법 .....	160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	163
〈표 3-6〉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	165
〈표 3-7〉 인건비 관련 법령 및 규정 .....	168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	168
〈표 3-9〉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	172
〈표 3-10〉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1 ..	173
〈표 3-11〉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2 ..	173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	174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	179

〈표 3-14〉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	190
〈표 3-15〉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	192
〈표 3-16〉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 .....	197
〈표 3-17〉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	198
〈표 3-18〉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	207
〈표 3-19〉 보안수당 관련 증명자료 .....	210
〈표 3-20〉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	212
〈표 3-2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	214
〈표 3-22〉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	219
〈표 3-23〉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절차 표준안 .....	222
〈표 3-24〉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233
〈표 3-25〉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1 .....	235
〈표 3-26〉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2 .....	235
〈표 3-27〉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	239
〈표 4-1〉 IRIS 구축으로 인한 현장의 연구행정 간소화(예시) .....	256
〈표 4-2〉 과제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	261
〈표 4-3〉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	262
〈표 5-1〉 전문기관 실태조사 항목(예시) .....	272

**그림 목차**

[그림 2-1] 협약 체결 절차 .....	62
[그림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구조와 협약방식 .....	62
[그림 2-3] 협약변경 사항 구분에 따른 변경 절차 .....	72
[그림 2-4] 기술료 제도 운영체제 .....	106
[그림 2-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	152
[그림 3-1] 통합관리계정 단위 예시 .....	244
[그림 3-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245
[그림 4-1] IRIS 구축 전후 연구자의 시스템 사용환경 변화 .....	258
[그림 4-2] 연구지원시스템 구성 및 주요 기능 .....	261
[그림 4-3]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	271



# 제1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I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제1절 개요

### 1. 배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취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 R&D 관리규정(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운영 중('19.10 기준)
  -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KISTEP, '16)
    - 범부처 공통규범 성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여 법적 효력에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혁신법이 제정되었음

#### 나. 입법 과정

-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발표(2018. 3. 7.)
- 「국가 R&D 혁신 방안」 발표(2018. 7. 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2018. 12. 18.)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현장 의견수렴(2019, 총 32회)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공청회(2019. 7.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회 본회의 의결 (2020. 5. 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2020. 6.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국무회의 의결 (2020. 12. 2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제정 (2020. 1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시행 (2021. 1. 1.)

## 2. 구성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구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개 장, 4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5개 장, 68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기관, 연구지원, 제도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서는 연구윤리, 제재처분 및 재검토, 사후관리, 연구전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보칙 및 벌칙)에서는 연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업무 위탁, 비밀유지의무 및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0개의 행정규칙을 운영하고 있음

〈표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훈령, 고시)

근거	행정규칙명
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법 제13조, 제20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법 제21조(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
법 제24조	연구지원기준 (고시)
시행령 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시행령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표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구조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4조(연구개발정보)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5조(정부의 책무)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2조(서식)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고시)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제30조(이의신청)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고시)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제41조(기술료의 사용)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 기준(고시)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67조(업무의 위탁)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대책)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50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제51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연구지원기준(고시)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55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훈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제38조(업무의 위탁)	제67조(업무의 위탁)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41조(벌칙)			
	제68조(규제의 재검토)		

나.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등과의 관계

- 혁신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중 5개 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되었으며, 해당 내용은 혁신법으로 이관

〈표 1-3〉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되고 혁신법으로 이관된 조항

과학기술기본법	혁신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항 제외)	법 전반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11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1항 제외)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동관리규정)」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령)」은 폐지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과 혁신법 및 시행령 간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혁신법 및 시행령
제2조(정의)	법 제2조(정의) 영 제2조(연구개발기관) 영 제3조(연구개발성과) 영 제4조(연구개발정보) 영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제5조(기술수요조사) 제6조(공고 및 신청)	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영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영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영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영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영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영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8조(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영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영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9조(협약의 체결) 제10조(협약의 변경) 제11조(협약의 해약)	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영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영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영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제12조의4(연구시설·장비 사용의 특례)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영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영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영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영 제2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영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영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제12조의5(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법 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영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영 제43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영 제67조(업무의 위탁)
제13조(간접비산출위원회)	영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제14조(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법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법 제52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보고)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영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영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영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영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영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영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영 제30조(이의신청)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혁신법 및 시행령
제18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제21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영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영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영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영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영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영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제22조(기술료의 징수) 제23조(기술료의 사용)	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영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영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영 제39조(연구개발성가로 인한 수익의 납부) 영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영 제41조(기술료의 사용)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24조의2(보안관리심의회) 제24조의3(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제24조의4(분류기준) 제24조의5(분류 절차) 제24조의6(보안등급 변경) 제24조의7(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제24조의8(연구개발성과의 보안등급) 제24조의9(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보고) 제24조의10(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영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영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영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영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법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영 제42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제27조의2(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3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영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영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영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27조의3(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법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영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영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영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영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제28조의2(전문기관에 대한 출연금 교부)	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영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영 제50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제29조(연구노트지침 마련·제공)	영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영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혁신법 및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법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영 제53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혁신법 시행규칙 간 관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
[별지 제3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별지 제6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요약서 [별지 제7호서식] 자체평가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연차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단계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최종보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 제7호의3서식]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5로 이동
[별지 제7호의4서식]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성과활용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재검토요청서

- 기존 연구개발비와 관련된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등 4개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통합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등 4개 고시·훈령 신설

〈표 1-6〉 혁신법 제정에 따른 행정규칙 변화

기존	혁신법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고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 [고시]	
연구노트 지침 [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신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신규]	연구지원기준 (고시)
[신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고시)

###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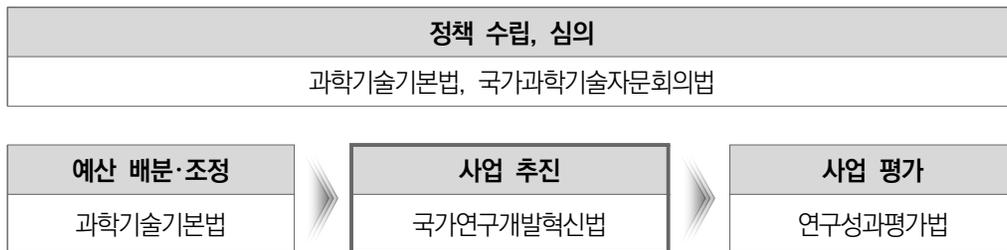
#### 가. 법적 성격 및 예외적용 사업

-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은 그 특성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법을 예외 적용하도록 규정

#### 나.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과의 관계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성과평가법)」과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서로 연관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1-7〉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단계별 적용 법률



- 「과학기술기본법」은 헌법 제127조에 따른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 등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본 이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혁신법은「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법에서는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제23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제29조), 제도개선 권고(제30조) 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상위평가 등 사업 단위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선정·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다. 부처별 법률과의 관계

-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을 가지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학술진흥법」 등의 법률에서는 부처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 법률의 조항이 혁신법과 상충되는 경우(예시 : 협약 방식, 제재 처분, 업무 위탁) 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단, 혁신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혁신법 제9조~제18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있음 (제1장제3절 '적용 범위' 참고)

〈표 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등을 명시한 법률 예시

법률명	소관(가나다 순)
「학술진흥법」	교육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부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법」	농촌진흥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해양수산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안전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 라. 연구기관 설립·운영 법률과의 관계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재원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표 1-9〉 연구기관 설립·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률 예시

법률명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무총리(국무조정실)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해양수산부

-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과 혁신법이 직접적으로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기관의 기본사업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4조 단서에 따라 해당 법률에 규정할 수 있음

기본사업 관련 입법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마. Q&A

**Q1. 혁신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 효력이 있는지? (예시 : 연차평가)**

- 해당 규정의 내용과 취지가 혁신법과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무관한 내용이거나 혁신법과 부합하는 내용이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여도 무방함
- 그러나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혁신법의 내용 또는 취지와 배치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
- 예를 들면, 연차평가는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차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입법 배경 및 취지이므로 다른 법률에서 연차평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혁신법에 위배

**Q2. 개별 법률에서 협약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예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를 근거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9조 제1항)
- 사업 공고 시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처별 법령에 수행 자격이 명시된 경우라도 혁신법 제2조 제3호 각 호의 기관이 모두 신청 및 수행할 수 있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 4.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고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념

-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란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을 의미하며 (법 제27조 제1항), ‘법령등’은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을 의미함(법 제8조 제2항)
- 즉,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뿐 아니라 각종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을 포괄하는 개념

〈표 1-10〉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구성

법령	행정규칙	각종 시책
<b>법령등</b> (법 제8조에 따라 제정·개정·폐지 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		-
<b>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b> (법 제27조~제29조에 따른 운영, 의견수렴 및 개선 대상)		

#### 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법 제27조 제1항), 법령등을 개정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법 제8조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27조 제2·3항)

#### 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의견수렴 및 개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법 제28조 제1항)
  - 해당 조항의 취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체계를 상시화(‘21~)
-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법 제28조 제2항)
  - 해당 규정의 취지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온라인으로 누구든지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운영 중(‘22~)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내 알람·고객 → R&D제도문의 → 제도개선 의견 게시판 운영
- 또한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함(법 제29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함

## 라.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음(법 제30조 제1항)
  -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내부규정 등이 현장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경우 개선 권고가 필요함
-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30조 제2항),
  -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음(제30조 제3항)
  - 또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제30조 제4항)

## 마. Q&A

### Q1. 부처별 훈령·고시 등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

- 혁신법과 하위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혁신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 ※ 예시 :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구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범위,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기준, 기술료의 납부 및 감면
- 다만 혁신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규정 적용 및 이해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혁신법을 인용할 필요

### Q2.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은?

-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공문 등으로 의견 요청 필요

### Q3.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공고문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포함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에 해당되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도 포함

**제2절      주요 용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제품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외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함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혁신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함
- 실무적으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참고)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8p, 기획재정부

6. 연구개발(R&D)사업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 '22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치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 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나.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본 법률에서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제9조~제15조), 성과관리 및 기술료(제16조~제18조), 보안(제21조),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제31조~제32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제35조) 등의 조항 등을 규정

다. 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의미함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국·공립연구기관을 의미함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연구기관을 의미하며, 출연연구기관 등 법인은 해당되지 않음
    -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제공동연구는 수행 가능함(Q&A 참고)

- 또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협약 체결은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주관/공동/위탁 중 하나의 유형으로만 수행할 수 있음(Q&A 참고)
-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의 대상이며(제9조~제11조), 연구개발비 사용·관리와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이고(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제13조, 제16조), 보안대책 수립과 연구지원체계 확립(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한정) 의무가 있음(제21조, 제24조)

## 라.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의미하며,
  -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평가, 실태조사·분석 등은 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마. 연구개발성과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의미하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음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 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제품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16조 제1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7조제1항),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제18조 제1항)

바. 연구개발정보

- 연구개발정보는 아래의 정보를 의미함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 나. 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 라. 국내외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 마.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
  - 바.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자에 관한 정보
  - 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 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에 관한 정보
  - 자.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 연구개발정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이 처리하여야 하는 대상(제19조 제1항)이며,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목적(제20조 제1항)
  - 연구개발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사. 연구지원

- 연구지원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연구지원은 제24조(연구지원체계의 확립)와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제24조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기준을 정하고 매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함(제25조제2,3항)

- 또한 연구지원은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법 제32조),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 등도 연구지원 활동을 할 수 있음

## 아. 국가연구개발활동

- 국가연구개발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아래의 행위를 의미함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라.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 자. 기술료

-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
-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통상 정부납부기술료)와는 상이한 개념

### 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과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
연구개발기관	<p>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p> <p>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p> <p>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p> <p>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p>	<p>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기관</p> <p>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p> <p>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p> <p>위탁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p>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성과	(유형적 성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등록·기타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물질 등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물질, 표준 등
연구개발정보	없음	<p>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과제 수행 정보</p> <p>연구개발기관·연구자 등 수행 주체 정보</p> <p>연구개발성과 정보</p> <p>국내외 과학·기술·사회·경제 동향 정보</p> <p>국가연구개발활동의 수행에 관한 정보</p> <p>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했던) 자에 관한 정보</p> <p>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p> <p>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통계 정보</p> <p>그 밖에 과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p>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연구지원	없음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수행·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전산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것 연구개발 관련 수요조사에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든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도록 변경
  -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가 삭제되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으로 수정되어 출연금이 아닌 예산비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포함
  - "과학기술 분야"가 삭제되어 인문·사회과학분야 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를 별도로 정의하여 연구개발사업과 명확히 구분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을 주관·공동·위탁으로 구분하여 권리 관계를 간소화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함
- **(전문기관)** 업무 대행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문기관 지정 절차 명확화
- **(연구개발성과)** 기존 규정에서는 소유 조항에서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를 구분하고 등록 및 기탁 관련 조항에서 10대 연구개발성과를 명시하였으나, 혁신법에서 이를 11가지 유형으로 정비
- **(연구개발정보)** 연구개발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정의하여 기관과 연구자가 처리해야되는 정보를 명확화
-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구지원을 정의하여 연구지원 관련 시책 수립 근거 확립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의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뿐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참여제한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는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인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및 신청, 각종 평가단과 위원회 활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료)** 실시의 정의를 「특허법」등과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기술료)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을 구분

## 카. Q&A

### ●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구성 관련

#### Q1.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합니다.

기존	혁신법
주관	총괄주관, 주관
협동	주관
공동	공동
위탁	위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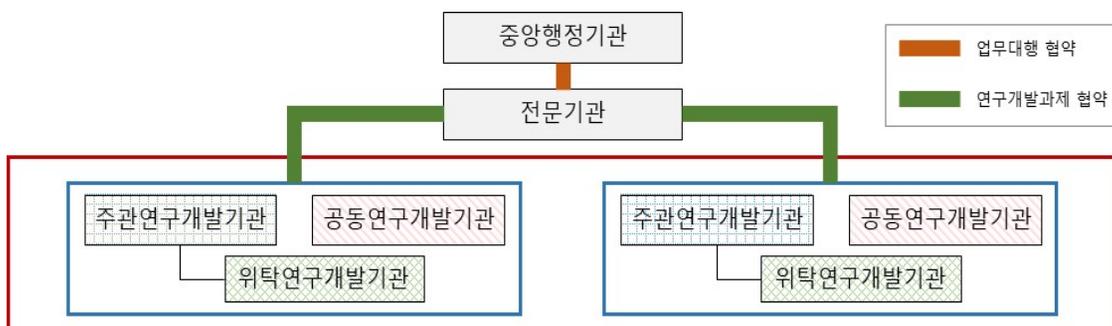
#### Q2. 기존의 연구개발과제가 총괄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개발기관)로 구성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 따라서 협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 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도 변경 가능함
-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협약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체결하여야 하지만,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으며(시행규칙 서식1 - 별첨 양식), 협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시행규칙 서식2 - 제6조 2항)

〈 연구개발과제 구조 전/후 비교(권장) 〉



〈 연구개발과제 협약 구조 〉



**Q3. 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 - 별첨 양식인 '총괄연구개발계획서'에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총괄연구책임자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공통의 연구개발계획(총괄연구개발계획)하에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들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조정·관리하고 연구개발 계획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등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총괄주관연구개발 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의미함
- 이 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어디까지나 연구개발기관의 지위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것이며, 혁신법 시행 이전의 총괄주관기관과 같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협약·평가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성과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행권한을 받아야 함

**Q4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협약 시 모두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으며,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선정·협약 이후에도 협약 변경을 통해 추가 및 변경 가능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Q5.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해야 함

**Q6.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 **(성과 소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소유(시행령 제32조)
- **(연구수행 전담)**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이 되나,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제한 대상이 되지 않음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제4조)
- **(연구개발비 상한)**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는 별도 제한이 없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
- **(기관부담금)**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음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공동	위탁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제한 적용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 40% 원칙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부담 제외 가능

**Q7.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연구개발과제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오해하여 기존에는 위탁이 가능하였는데 혁신법에 따라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은 이 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위탁 가능

기존	혁신법	위탁가능
주관	주관	O
협동	* 여러 과제가 연관된 경우 주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 수행 가능	O
공동	공동	X
위탁	위탁	X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정의)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528호, '20.3.17.) 제2조(정의) 5.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Q8.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의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인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에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있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은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3조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이 체결하는 협약을 의미하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협약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임

**Q9.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정의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이 있는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지?**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신청과 협약 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신청 절차는 불필요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체결 이후 추가되는 경우 협약 변경에 해당되므로 협약 변경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필요

**Q10.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또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A대학이 B과제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 수행할 수 없음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Q11.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A대학이 C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ex) A대학이 D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수행할 수 없음

Q12.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동시에 수행 가능한지?

ex) A기관이 E과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F과제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 두 과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함

Q13. 같은 기관에서 다른 연구팀이 동시에 같은 과제를 수행하려는 경우, 어떻게 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ex) A대학이 F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로 참여하고 있으며 책임자는 ㄱ교수인 상황에서, A대학의 ㄴ교수 연구팀이 F과제에 위탁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에 연구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또한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배분하여 사용
- 예시의 경우 ㄴ교수 연구팀은 해당 과제에서 별개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ㄱ교수 연구팀과 연구 내용과 연구비를 배분할 필요

● 연구개발기관 요건 관련

**Q1.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 14p)

**Q2. 공기업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공기업이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

**Q3.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 등 연구용역(260목으로 편성)을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이 경우 연구용역은 연구개발과제이며, 이를 수행하는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4.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해외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법 제2조 제3호 각 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만약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 등 제2조 제3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회사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예시) 본사는 해외에 있으나 국내에 법인 형태로 지사를 설립한 경우 국내 법인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5.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라면, 해당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명시하는 방법으로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해외 기관의 명칭은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중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란에 기재
- 외국에 소재한 해외기관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지급 가능(외국인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동일)

**Q6. 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수행 자격을 부처별 규정 또는 사업 공고 등에서 한정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함(시행령 제9조 제1항)
- 사업 공고 시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처별 법령에 수행 자격이 명시된 경우라도 혁신법 제2조 제3호 각 호의 기관이 모두 신청 및 수행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 ● 전문기관 지정 관련

## Q1.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령, 고시, 공고, 추진계획 등 대외에 공개되는 문서를 통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22조 제6항)

## Q2.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전문기관의 업무를 외부 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지?

-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대행 받은 업무 전체를 다시 대행 맡길 수는 없으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업무를 용역 형태 등으로 의뢰하는 것은 가능

## Q3.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혁신법에 위배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에 명시된 전문기관의 업무는 대행만 가능하며,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이 가능함

## Q4. 모든 전문기관에 대해 지정행위를 새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 전문기관이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기관이거나 기존의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에 전문기관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전문기관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불필요

※ **기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 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Q5. 사업단도 전문기관에 해당하는지?

- 사업단이 전문기관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일부를 대행하여 협약, 평가, 정산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해당됨(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
- 따라서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령, 고시, 공고, 추진계획 등 대외에 공개되는 문서를 통해 사업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법 제22조 제6항)

## 제3절      적용 범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6.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
7.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경우에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2.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 가. 개요

-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적용
  - 실무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R&D) 또는 기획재정부(일반R&D)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을 의미함
  - 예산 중 일부를 연구개발 예산으로 분류하는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서 연구개발 내용이 구분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에 대해 동 법을 적용
    - \* 대학혁신지원(교육부) 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과기정통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기본경비(농식품부), 질병관리청 기본경비(질병청)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비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혁신법 적용 여부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 특정 사업 유형의 경우 혁신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거나(법 제3조), 다른 법률을 적용함(법 제4조 단서)

## 나. 혁신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제3조)

- 법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재처분 등 다른 조항은 혁신법을 적용함

\*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선정, 협약, 관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활용(제16조, 제17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제18조)

- ①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제1호)
  -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립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비(260-01목)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도 해당
  - 이 유형의 사업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의 법률과 기관 내규가 적용됨
- ②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제2호)
  - ODA, 국제협력 등을 목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
  - 이 유형의 사업은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부에서 국제기구(예 : OECD) 등으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협정·조약 또는 해당 국제기구 등의 규정에 따름
- ③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제3호)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방사업 중 혁신법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사업
  - 이 유형의 사업 추진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따름
- ④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제4호)
  -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되는 부처별 정책연구사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본사업
  - 정책연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이에 근거한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행안부)」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혁신법 제1장, 제3장~제5장을 따름
  - 이 유형의 사업 추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한국국방연구원의 기본사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기관 내규에 따름
- ⑤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제5호)
  - 기획·평가·관리를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위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2021년 예산부터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목)로 편성

- ⑥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 분야(제6호)
  - 「학술진흥법」에 따른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의미
- ⑦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
  -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부 소관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과기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이 해당되며, 실무적으로「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을 적용

**다. 혁신법 일부에 대해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사업(제4조 단서)**

- 법 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른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 즉, 다른 법률에 혁신법에 상응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을 적용하며, 혁신법에 상응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 혁신법을 적용

- 중앙행정기관이 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연구운영비 사업이 혁신법에 따른 기본사업에 해당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법률에 명칭과 설립 있는 기관\* 및 그 부설기관을 의미함

\* 예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표 1-11〉 사업 유형별-절차별 적용법률

절차	사업 유형	적용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기획</li> <li>• 예고 및 공모</li> <li>• 연구개발과제 신청</li> <li>• 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및 선정</li> <li>• 협약 체결·변경·해약</li> <li>• 연구개발과제 수행 평가 및 보고</li> </ul>	중앙행정기관 직접 수행 사업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외국과의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해당 협정·조약 등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분야 사업	국방과학기술촉진법 등
	정책 개발, 정책 현안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정부출연기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전문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 업무 수행사업	국가재정법 등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자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고등교육법
	산학협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촉진 지원사업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산학협력법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기출연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	

절차	사업 유형	적용법률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비 지급·사용</li> <li>• 연구개발성과 귀속·활용</li> <li>• 기술료 징수·사용</li> </ul>	중앙행정기관 직접 수행 사업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외국과의 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해당 협정·조약 등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분야 사업	국방과학기술촉진법 등
	정책 개발, 정책 현안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정부출연기관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전문기관의 대행 또는 위탁 업무 수행사업	국가재정법 등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자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고등교육법
	산학협력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촉진 지원사업중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사업	산학협력법
	그 밖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정보 처리 및 보안</li> <li>• 부정행위 제재처분</li> <li>•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li> </ul>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 라. 보조금으로 편성된 연구개발사업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
  - \* 320-01목(민간경상보조), 320-07목(민간자본보조), 330-01목(자치단체경상보조), 330-03목(자치단체 자본보조)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6)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 연구개발비의 사용·정산, 시스템 사용 등 혁신법과 보조금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혁신법을 적용하며,
  - 보조금법 중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35조의2), 보조사업자 공시(제26조의10), 보조사업 연장평가(제15조) 등 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은 보조금법을 적용

〈표 1-12〉 혁신법과 보조금법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조항(적용 법률 표시)

업무 단계		보조금법		혁신법	
		주요내용	근거	주요 내용	근거
교부 신청	신청	•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를 중앙 관서장에게 제출	법 제3조 영 제7조	• 중앙행정기관이 공모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법 제9조
	선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여 결정 • 공모일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법 제17조	• 선정평가 실시(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평가 생략 가능) •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체결	법 제10조 법 제11조 법 제14조
	교부	•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지침 제17조	• 일괄지급 또는 건별지급	사용기준 제19조
사업 수행	집행 점검	•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법 제25조 법 제26조	•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변경·중단 가능	법 제15조
	실적 평가	• <b>보조사업실적평가를 운영하며 실적실적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연회)</b>	지침 제33조	-	-
정산	실적 보고	•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포함)를 중앙관서장에게 제출 • 10억원 이상은 회계 감사보고서도 같이 제출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법 제13조 령 제26조 사용기준
	금액 확정	• 보조사업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지 심사	법 제28조 법 제2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 실시(령 제26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으로 정산 가능)	
	집행 잔액 반납	• 집행잔액, 이자, 수익금을 반납	지침 제26조	• 집행잔액, 위반금액 등 반납	
사후 관리	정보 공시	• 1천만원 이상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	법 제26조의10	-	-
	연장 평가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	법 제15조 령 제6조	-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결과는 e나라도움에 연계
  - 집행 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통합 EZbaro)을 통해 관리하나 그 결과는 통합 RCMS시스템에서 모두 취합 후 e나라도움에 제공
  - 지자체보조사업 등 연구비시스템을 통해 직접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되 그 집행 내역은 통합RCMS로 연계

마.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부처별 법률 및 관리규정	• 혁신법령 및 하위규정
혁신법 제3조의 사업	직접수행사업 (제1호)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법 제9조 ~ 제18조까지의 사항 ⇒ 종전과 동일(기획평가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변동사항이 상이)</li> <li>•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연계 등의 조항 ⇒ 혁신법 적용</li> </ul>
	국제분담금 (제2호)	「국가재정법」, 개별 협정·조약	
	국방·보안사업 (제3호)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정책연구사업 (제4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기획평가사업 (제5호)	사업별 운영방식 상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6호)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고시하는 대학재정 지원사업 (제7호)	해당사업 관리 규정	
혁신법 제4조 단서의 사업	출연연 기본사업	기관설립 근거법, 기관별 내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혁신법 제9~12, 14, 15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 종전과 동일</li> <li>• 그 외 혁신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 혁신법 적용</li> </ul>
기타	보조금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혁신법 적용

바. Q&A

● 국가연구개발사업 적용 관련

**Q1.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R&D 성격인 사업은 혁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R&D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은 아님
- 해당 사업 운영 시 혁신법의 절차나 서식을 준용할 수 있으나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재처분 등 혁신법에 따른 처분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Q2. R&D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R&D 성격이 아닌 사업도 혁신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R&D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연구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R&D 성격인 사업이므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임

Q3.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서 R&D와 비R&D로 내역사업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 내역사업에서 R&D와 비R&D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 R&D 내역사업에만 적용

Q4. 하나의 세부사업에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업이 혼재된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 (예시) 내역사업으로 기획평가관리비가 편성된 경우, 세부사업이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역사업과 공모를 통해 민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된 경우 등

- 내역사업 또는 사업의 세부 내용에서 제3조 각 호 또는 제4조 단서에 해당되는 사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역사업 또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만 예외 가능

● 제3조 관련

Q1.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 내에 연구용역비(260목)로 집행하는 용역과제는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적용을 받지 않음

Q2. 중앙행정기관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3조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 해당되지 않음

Q3. 국제부담금이 아닌 국제공동연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예시) 국제협약 또는 MOU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국제공동연구 등

-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나, 협정·조약 등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 가능하며(법 제9조제4항),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사용하거나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는 사용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6조 제3항)

Q4. 제3조 제2호의 '협정·조약 등'에 양해각서(MOU)가 포함되는지?

- 이미 협정 또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기존 협정·조약의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협정·조약 등'에 포함되며, 협정 또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형식과 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2호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Q5. 국방 분야의 사업에서 보안과제와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가 모두 포함된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 보안과제에 대해서만 혁신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 제4조 관련

Q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는지?

- 법률에 기관 명칭이 명시되지 않고 설립 여부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접 설립된 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Q2.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위해 다른 법률에서 어떠한 조항이 규정되어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등을 직접 규정하고 있거나 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 필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3조(출연금 등)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3. 기관이 일반출연금(350목)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제4조 단서에 따른 기본사업에 포함되는지?

※ 국립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국립생태원 출연 등

- 연구개발예산이 아닌 일반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음

Q4. 기관 기본사업이 제3조와 제4조 단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예: 경인사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사업)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제3조를 적용함

## 제4절 주체별 책임과 역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화 촉진
8.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가.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또는 수행 주체가 되는 정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원칙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법 제5조부터 제7조)
  - 본 조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역할은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 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역할 분담을 규정함(법 제8조)

## 나. 정부의 책무

- 종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원칙을 이관하여 정부의 책무로 명문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투입 대비 경제적 성과를 내포하는 “효율성” 보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달성, 파급력 등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제2호)
  - 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강조함(제5호)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제7호)하도록 새롭게 규정함

## 다.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의 당사자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그간 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지향해야 할 원칙과 철학을 제시
  - 특히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제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며(제2호), 행정부담 등 연구 이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는 등(제3호)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함

## 라.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정부, 연구개발기관과 구분되는 연구자 본연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 또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함

## 제5절      경과 조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부칙 제4조(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부칙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6조(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으로 본다.

#### 가.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

- 혁신법 시행 이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혁신법에 따른 행위로 인정(부칙 제2조)
  - 예를 들면, 혁신법 시행 이전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혁신법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또한 혁신법 시행 이전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다시 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나.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

- 혁신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혁신법을 적용
- 다만 종전에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부칙 제3조)
  - 종전에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은 종전 규정을 따름 (부칙 제4조)

#### 다. 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제재처분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부칙 제5조)
-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참여제한 처분은 혁신법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에 해당함 (부칙 제6조)

## 라. Q&amp;A

## Q1. 기존에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동 법이 적용되는지?

- 기존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 협약, 평가, 보고서 제출 등 과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적용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법 시행 이전에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

## Q2.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협약을 개정해야 하는지?

- 협약의 내용이 혁신법 및 하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으며,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중대한 경우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 Q3. 단년도 협약을 체결한 다년도 과제의 경우, 협약을 개정하여 협약 기간을 변경해야 하는지?

- 협약 종료 전까지 협약 종료일을 과제 종료기간과 일치하도록 기존 협약을 개정할 필요
- ※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 Q4.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

- 1) 참여제한 등의 기간은 어느 규정을 기준으로 하는지?
- 2) 법 제33조에 따라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 1) 혁신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종전 규정(과기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개별부처의 제재처분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 2) 과기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이나, 해당 처분의 사전통지일이 '21.1.10이후인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재검토 요청 가능

## Q5.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

-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할 필요

## Q6. 20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Q7.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

- 정산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집행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집행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Q8. 연구개발단계가 3년인데 1·2차년도에 이미 정산을 실시한 경우, 정산 시 1·2차년도 사용분에 대해 다시 정산하여야 하는지?

-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3차년도에 대해서만 정산함

Q9.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이 2019년에 이루어졌으나 등록은 혁신법 시행 이후인 2021년에 등록되었다면 혁신법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특허 등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없는지?

- 혁신법 제16조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법 시행 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는 과기기본법에 따름(혁신법 부칙 제3조)
- 즉, 과제협약일을 기준으로 협약일이 혁신법 시행 이전이라면 과기기본법 제11조의3 및 혁신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혁신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음



# 제2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I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절 기획 및 예고

#### 1. 사전기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에는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내용
2. 동향 및 파급효과
3. 수행기간
4.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안보, 재난·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2.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제8조(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세부 내용을 그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2.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3. 기대효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제45조제1항제1호나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가. 규정의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수요조사(Bottom-up) 및 사전기획(Top-down)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개발 기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나. 수요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함
  - 수요조사에는 목표 및 내용, 수행기간, 동향 및 파급효과,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가 포함되어야 함
- 다만, 안보, 재난·재해 대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수요조사 실시의 예외

- 국가 안보·국방 관련 분야
- 재난·재해에 대한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분야
- 긴급한 사회적·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

## 다. 사전기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음
  - 사전 기획 관련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 필요성, 논문 또는 특허 등 연구개발 동향, 기대효과를 미리 사전 기획에 포함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 기획 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사전 기획 절차는 부처별 재량으로 자율 시행하되, 최종 결과물(RFP 등)은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수요조사는 1회 이상 시행 필요

##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주도적 사전기획의 의무</li> <li>•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li> <li>• 기초연구, 단기 연구를 제외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 조사</li> <li>• 6개 항목에 대한 의무적 기술수요조사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조사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사전기획</li> <li>• 정기적인 수요조사(Bottom-up)를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li> <li>• 사업 특성에 따른 수요조사 항목 및 실시의 예외 허용</li> <li>• 필요한 경우 사전기획을 통한 Top-down 기획 가능</li> </ul>

## 2. 예고 및 공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支援) 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른 예산안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목적
    - 나. 지원 내용
    - 다. 지원 기간
    -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 ② 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제품·장치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그 제품·장치를 개선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총 15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제1항제1호나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참여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모가 시작되기 전에 공모 일정 등을 미리 알리는 예고제도 도입
  - ※ 불특정 시점에 짧게 추진되는 과제 공모는 부실한 연구팀 구성과 부실한 연구개발 계획을 양산할 수 있음
- 연구자가 연구 주제 선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원칙으로 규정
  - 필요 시 지정 등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

#### 나. 예고의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매년 1월31일\*까지 예고하여야 함
  - \* 시행령 제6조에서는 통상적인 공고시기를 고려하여 예고 시기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1월 중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을 공고하기 이전에 반드시 예고를 하여야 함
- 예고 시 아래 네 가지 사항을 포함하되,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예고 가능함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
    -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표, 성격, 기본방향 등을 안내
  - ②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 해당연도 사업의 사업비 규모, 연구개발과제의 개략적인 개수 및 연구개발비 지원규모(전체 및 해당연도) 등을 안내

## ③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 연구개발과제 공모, 선정평가, 확정·통보 및 연구개발 개시, 연구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개략적인 절차·일정 안내

## ④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내용 및 기간

- 지원 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및 지원 기간 등을 안내
- \* 예: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 / \*\* 예: 자유공모형, 지정공모형, 경쟁형 등

## 다. 예고 대상제외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가 국회 예산안 등\*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예고 대상에서 제외함
- \*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등 긴급사유 발생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임

## 라. 예고의 방법 및 수단

-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별로 소관 전체사업에 대해 동시에 예고\*할 것을 권고하며, 예고 수단은 아래의 예시 참조
- \* 사업별로 예고하되, 동시(또는 유사시기)에 예고하는 것도 포함
- (예시1)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과제지원시스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NTIS 포함) 등을 통해 상당기간\* 동안 공고
- \* 예시: 예고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작일까지
- (예시2)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 합동설명회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연구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자료 배포
- (예시3) 그 밖에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문서, 매체를 통해 공고

## 마. 공모 및 공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 ①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목적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제2조)

-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계상 불가 과제 여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에 따른 계상 불가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자격
-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30일 보다 단축 가능
- 선정평가 결과 선정과제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기간을 30일보다 단축할 수 있음

바. 지정 등 공모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경우

-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사.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공모의 예외 (또는 공고기간의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 및 사회·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li> <li>• 외국 정부와의 양해각서 등에 따라 추진되는 국제 공동연구</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주도가 불가피하거나 경쟁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연구개발 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li>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 재해, 건강 등 국민 생활의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li> <li>•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li> <li>•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li> <li>•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li> <li>•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li> </ul>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li> <li>•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li> <li>•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 및 일정</li> <li>•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li> <li>•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li> <li>•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li> <li>•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li> <li>• 혁신도약형·경쟁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li> <li>- 지원내용(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내용 포함)</li> <li>- 지원기간</li> <li>- 보안과제 여부</li> </ul> </li> <li>•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li> <li>-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li> </ul> </li> </ul>

## 제2절

## 사전검토 및 선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선정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1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2.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하려면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전 검토 결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을 구비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候補團)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구성에 관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제1호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5.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사람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시 선정평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여 선정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정결과 통보 및 통보 대상을 명문화하여 연구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적합한 대상에 대한 평가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되 전문성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연구개발과제 신청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해당 연구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 시 제시한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접수 방법 등을 참조하여 과제를 신청
  - 연구개발계획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 연구개발계획서 항목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 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8.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내용

## 다. 사전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에 앞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해 참여제한 대상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함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1조)

### 사전검토 항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 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성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의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함
  - 평가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평가위원 구성 비율 및 선정기준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

- 평가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뛰어나고 성실한 선정평가위원이 단계·최종평가 및 특별평가에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 시행(시행령 제27조제5항)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선정 기준

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원칙

-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시행령 제27조제3항, 제4항 관련)

〈표 2-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제척기준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②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④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해야함(법 제14조제4항, 시행령 제28조)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

마.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의 기준

-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공고 시 명시한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우대할 수 있고, 최근 3년 이내에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처별,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우대 기준 및 적용방법을 공고 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에 해당 여부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확인 가능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예시

구분	기 준
우대	1.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우수등급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보안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높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b>4. 기술실시를 통한 정부납부기술료 실적이 우수한 경우</b>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른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6.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7.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8. 지속적으로(최근 3년 이상)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9.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의 저명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 등으로부터 수상한 실적이 있는 연구자 10.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11. 국제공동연구 중 외국의 정부·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과제 12. 최근 3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 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
불리한 대우	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불리한 대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상기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바. 신청과제의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를 함에 있어 수행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함

〈표 2-3〉 선정평가 평가항목

필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li> <li>•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li> </ul>
선택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li> <li>•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li> <li>•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등을 평가해야 함</li> </ul> </li> <li>※ 유사·중복성보다 ‘차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검증은 평가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되 ‘차별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판단해야 함</li> <li>•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li> <li>•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li> </ul>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과제에 대한 평가를 서면평가, 대면평가(발표, 토론 등), 온라인평가, 현장평가 및 이를 혼합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은 과제 특성을 반영한 평가절차 및 평가 기준을 과제 공고 시에 공개

## 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 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공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함(법제14조제5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시행령 제29조제2항)

## 자.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2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 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선정절차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대상에 대한 검토 여부·절차가 불명확하여 선정평가 과정에서 함께 검토	• 선정평가에 앞서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선정평가 부담 경감
우대·감점 기준	• 세부적으로 규정된 우대·감점 부여항목과 부여점수 등을 적용	• 과제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유·불리한 대우의 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정하고 공고 시 안내하여 이를 선정평가 시 적용
평가위원 제외대상	•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평가위원 선정 제외대상이 광범위	• 필수/선택적 제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평가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여 평가위원 선정 대상을 확대

## 카. Q&A

**Q1. 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감점을 연구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지?**

- 혁신법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협약의 당사자로 하고 있어 법리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유리 또는 불리한 대우를 하도록 하는 것임
- 한편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의 대상을 기관·단체·연구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적인 가·감점의 검토 및 부여도 기관, 단체, 연구자를 대상으로 함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12. 개정)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Q3.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는지?**

- 입법 취지,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시행령에 적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적용방법(감점 등)은 재량사항임
- 따라서, 사업 및 과제의 공고 시 불리한 대우(감점) 사항으로는 시행령 제12조제5항 각 호 이외의 사유를 명시할 수 없음

**Q4.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하지 않으면 제재처분이 있는지?**

- 제재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협약 당사자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함

**Q5. 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해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 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선정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
-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

##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 1.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 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관행적 연차협약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연차평가·정산에서 단계별 평가·정산 원칙으로 전환
-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단가·수량 중심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
  - ※ 단, 연구시설·장비비 및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등 일부 항목 제외

- 단계별 정산 원칙 하에서 단계 내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을 허용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임

## 나. 협약 체결 원칙

- **(협약체결 단위)**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차협약·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단계(다년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가 중단(해약)될 수 있음
- **(협약의 당사자)**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부처·전문기관과의 협약 당사자이며, 연구자는 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전문기관은 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자격으로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
  - 주관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도 부처(전문기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부처·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짐

## 다. 협약 체결 절차·방법

- **(협약체결일)**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함
  - ※ 협약대상 통보 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등 협약체결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
- **(협약체결 명의)** 표준 협약서식 내 각 협약의 당사자(부처·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가 협약내용을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
  - 다만 전문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부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 부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단 명의로 부처를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 소속기관 명의로 협약을 체결)
- **(협약 체결 절차)**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전자협약 체결 시 부처·전문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협약 체결 및 필요서류 안내, 협약서 발송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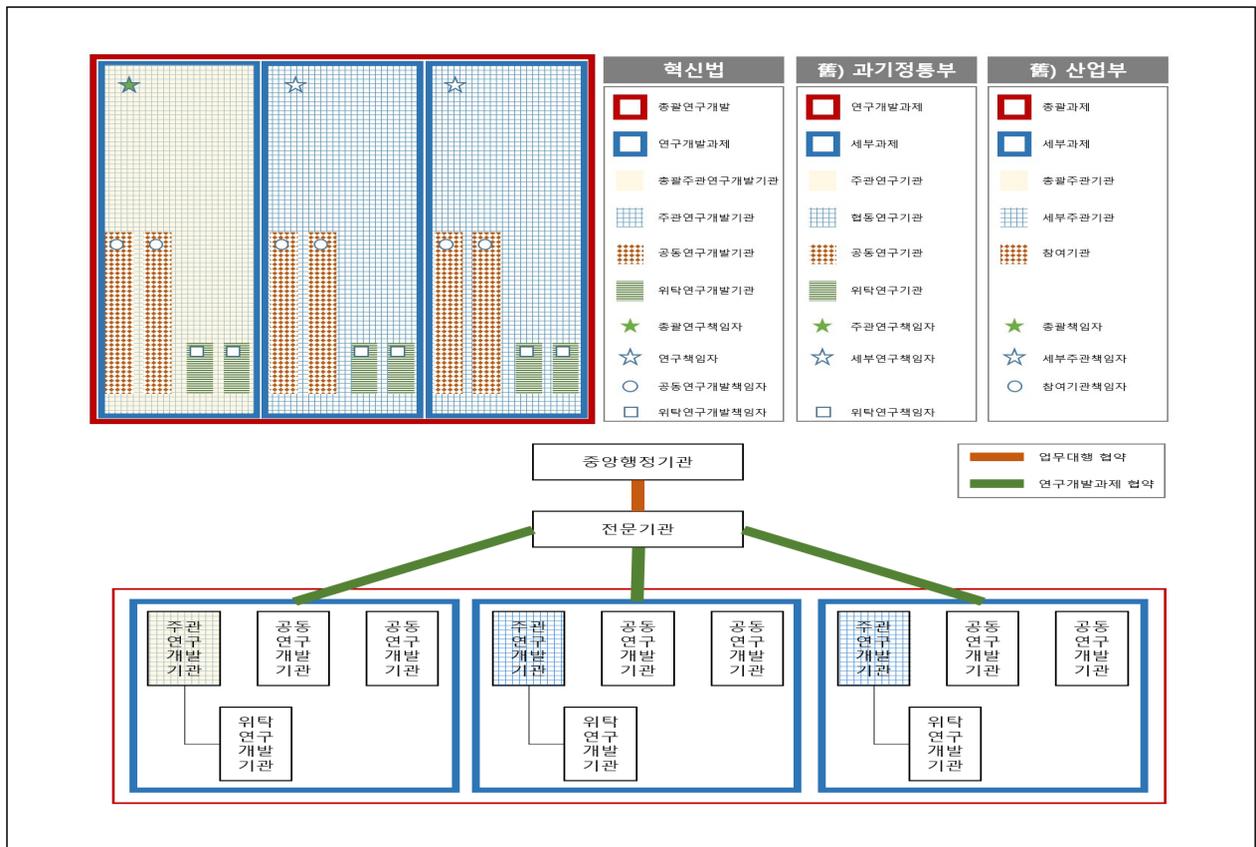
-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인편의 방법 등으로 안내·발송이 가능하며,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송 가능

● (협약서 보관)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장의 개별 협약서 열람이 상시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협약을 진행한 경우, 협약이 완료된 개별 협약서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발송하여 상호 보관하여야함



[그림 2-1] 협약 체결 절차



[그림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구조와 협약방식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협약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체결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p.26 참고)

## 라. 협약 체결의 내용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처·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쌍방 의사합치에 의해 협약을 체결
  -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란 세부항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세부항목별 총액만 개괄적으로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을 의미
      -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 ※ 단, 연구시설·장비비 및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는 제외
  - ②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연구자)은 협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쌍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세부조건을 정할 수 있음
  -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마. 표준 협약 서식

- 연구개발과제의 표준 협약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와 ‘협약의 세부조건(예시)’으로 구성되어 정하고 있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① (과제 협약서) 협약의 당사자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 다만 전문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부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최초 협약 이후,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협약의 변경 필요
  - ② (협약의 세부조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의무를 정하도록 함
    -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을 예시로 활용하여, 혁신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 ① **(계획서 표지)** 제출인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 ② **(본문1)**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 ③ **(본문2)**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 이전까지 변경·추가 활용이 가능함
- ④ **(별첨 :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를 두고 추진·관리될 경우에 작성
  -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각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 협약 체결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확인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첨부서류로 제출

###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협약체결 단위	(계속과제의) 연차협약	전체 연구개발기간
협약 당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협약 체결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규정의 취지

- 협약의 당사자로서 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약변경을 강조
-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변경은 당사자 간 통보를 통하여 변경된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해소
- 협약 변경 절차로서 ‘상호간 문서를 통한 사전 협의’ 또는 ‘특별평가’를 명시
- 연구개발환경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명시

##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 승인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및 제74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 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 경미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 통보사항)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됨
  -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표 2-5>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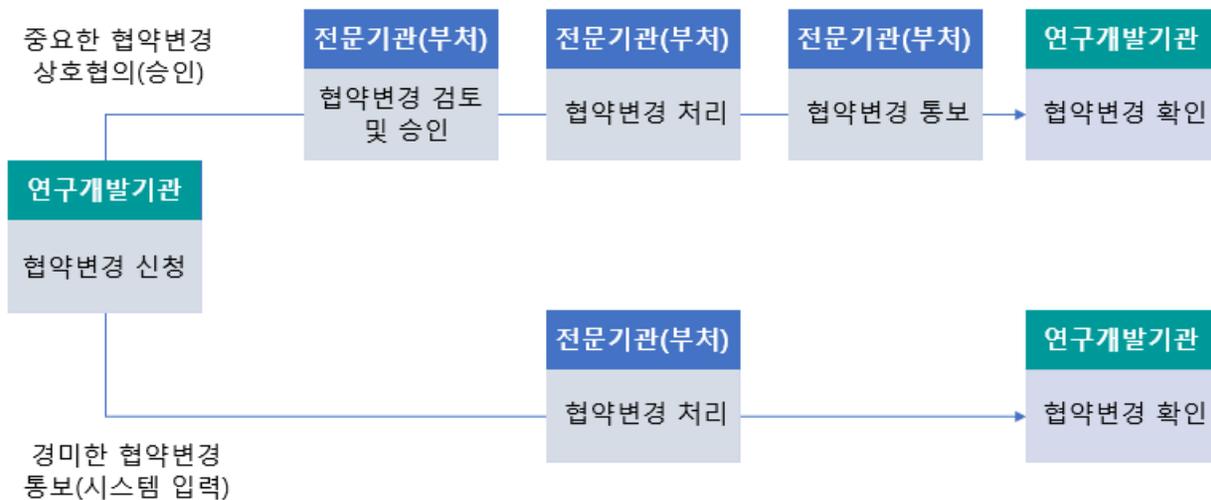
구분	세부 항목	승인/통보	관련 법령	
기관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개발기관 외 변경	④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3항제4호
	기관정보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 정보변경 (기관명칭, 기관장 등)	통보	영 제14조제3항제4호
인력 변경	연구책임자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자 (연구책임자 제외)	④ 연구자 변경 (연구책임자 제외)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2호

구분		세부 항목	승인/ 통보	관련 법령
	연구자 외 변경	⑤ 연구지원인력 등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개발기관외 인력	⑥ 연구개발기관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인력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 개발 목표 · 내용	연구개발 목표	① 최종 /단계 목표변경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성과 및 성능 목표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개발 내용	① 추진전략, 방법 등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1호
		② 기술기여도	상호협의 (승인)	영 제39조제2항
연구 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① 연구개발비 총액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연구개발기관 부담금변경 (현금 /현물간 변경 포함)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인건비	①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활동비	①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액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위탁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액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국제공동연구비	① 계획대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시설· 장비비	①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보유현황 변경	통보	(현물과 연계)
		③ 설치·운영 장소변경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④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 금액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26조제2항 연구비 고시 제26조제3항
		② 연구수당 증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 금액보다 증액 불가	승인	
	간접비	① 간접비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간접비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 변경	①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단, 승인사항은 제외)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	①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	승인	(평가 시 활용)
연구개발비 계좌	①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 기간	연구개발기간 변경	① 전체 /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기타	기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약 시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3항,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5호 영 제14조제2항제6호

※ 협약변경의 상호 협의 사항은 실무 상 승인사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 라. 협약 변경 절차

- **(중요한 협약 변경)** 중요한 협약 변경의 경우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 신청에 따라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협약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 수행
- **(경미한 협약 변경)**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
  -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 부처·전문기관은 협약변경 처리된 사항을 포함한 협약 변경을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를 확인



[그림 2-3] 협약변경 사항 구분에 따른 변경 절차

## 마. 협약의 해약

- 부처·전문기관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즉시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하고, 협약을 해약
- 협약 해약 이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26조를 준용

##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 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간접비 총액} \times (\text{간접비 집행비율} - \text{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 바.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특별평가 요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변경(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및 과제 중단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②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③ 연구개발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협약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요청을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환경 및 상황의 변경에 따라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변경을 위한 특별평가를 부처·전문기관에 표준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표준으로 함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평가 후속조치)** 특별평가를 거쳐 결정된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은 각각 ‘라. 협약 변경 절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협약의 해약은 ‘마. 협약의 해약’의 절차를 준용
  - 특별평가 결과 협약 변경 또는 과제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은 위반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에 시정 요구
  - 특별평가 결과 협약 변경 또는 과제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부처·전문기관은 특별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수용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사유(연구개발 환경 변화 또는 목표 조기 달성)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 평가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최종평가와 특별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평가결과는 각각 도출하여야 함

### 사.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협약의 당사자	협약변경의 ‘승인’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협약변경 절차	협약변경의 승인/통보사항 기준 및 요구절차 부처별 상이	혁신법에 따른 통일된 기준 적용 경미한 사항은 통보로 같음
협약 해약 사전절차	협약해약의 사전절차 부처별 상이	평가단에 의해 전문적인 평가(특별평가)를 거쳐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이 가능

### 아. Q&A

#### Q1. 협약 체결 이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참여시키려는 경우 그 절차는?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함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함

**Q2.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는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됨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Q3.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음

**Q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 할 수 있음

**Q5.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되었음.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함
  - ▶ 만약, 이미 연차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음.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Q6. 어떤 경우에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 변경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본국귀환, 사고·재해,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 담당 업무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Q7. 혁신법 이전 협약 변경 시 승인 사항으로 관리하던 참여연구자(예: 핵심연구자)도 혁신법에 따라 통보 사항이 되는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해석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를 제외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변경은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변경은 협약 변경 시 통보사항임

**Q8.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의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등 승인사항은 제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등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통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향후 IRIS(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통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 IRIS(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되기 전에는 한시적으로 부처별 과제지원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가 가능함

**Q9. 모회사(A기업) - 자회사(B기업) 간 별도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중인 모회사(A기업)를 자회사(B기업)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 모회사(A기업)와 자회사(B기업)가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A기업(주관)-B기업(공동) 등의 형태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함
- 또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중인 모회사(A기업)를 대신하여 자회사(B기업)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함. 이 경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협약 변경으로 부처와 상호협의를(실무상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Q10.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평가 실시 사유가 발생한 기관만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는 특별평가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만 대상으로 함

**Q11. 법인등록번호는 같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기관·단체가 같은 연구개발과제 안에서 다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격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하는 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관청이 과세편의를 위해 부과한 번호로 법인격과는 무관함
- 따라서 법인번호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기관·단체가 같은 연구개발과제 안에서 주관/공동/위탁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 (예: 동일한 A 법인 내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른 a기관과 b기관이 주관-공동으로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

**Q12.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후속조치는?**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상호 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임
- 연구책임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연구책임자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음

**Q13. 과제시작 이후에만 협약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함
- 단, 협약 전에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 변경 수준으로 협약 전 변경이 가능함

## 제4절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평가 및 보고

### 1.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단계평가(이하 “단계평가”라 한다) 이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또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최종평가(이하 “최종평가”라 한다)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으로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분류해야 한다.
-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2. 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제17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1.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9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선정평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2. 단계평가·최종평가·특별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2.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

3. 통보된 평가 결과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사유
  2.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사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규정의 취지

-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할 것을 명문화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감액,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과제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특별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 **(평가실시)** 단계 및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수행계획 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으로 분류함.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단계 및 최종평가 평가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단계평가 시)

연구 수행과정 평가

<b>기준</b>	<p><b>(관계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최종평가 :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li> <li>• 평가결과 '실패' 과제 → 성실수행 평가를 통해 제재조치 면제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 → (실패 시) 과정 평가 →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li> </ul> </li> </ul>
<b>혁신법</b>	<p><b>(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계·최종평가 :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li> <li>•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평가+과정평가 → (극히 불량 등급) 중단 및 제재처분</li> </ul> </li> </ul>

〈표 2-6〉 연구 수행과정 평가지표 예시

평가지표(예시)	세부 지표(예시)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행방법의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성격상 반복수행이 가능한 연구의 경우 연구목표 도출 실패 후 1회 이상 재시도했는지 여부</li> <li>- 연구 기자재 활용의 적절성</li> </ul> </li> <li>• <b>수행과정의 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노트 등 기술개발과정에 대한 자료 및 각종 데이터가 체계적이고 충실한지 여부</li> <li>- 연구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초기·수정모델, 실험데이터 등 유·무형적발생물의 존재 여부</li> <li>- 연구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li> <li>-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는지, 참여기업의 변경, 부도 등으로 인하여 연구 진행에 곤란 등의 존재 여부</li> <li>- 연구환경 구축의 적절성</li> </ul> </li> </ul>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연구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목표한 A라는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파생된 B라는 결과물의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li> <li>* 3M사의 포스트잇, 머크사의 발모제 프로페시아, 화이자사의 비아그라 유사 사례의 경우 등</li> </ul> </li> <li>• <b>연구대상 및 방법의 독창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연구사례가 없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대상에 도전</li> <li>- 전례 답습이 아닌 혁신적이거나 새로운 방법을 통해 연구가 수행되어 학술적·사회적으로 공헌</li> </ul> </li> <li>• <b>후속 연구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결과 도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기존의 장애 요인 해소 등을 통해 목표달성 가능성을 높인 경우</li> <li>- 당초 목표한 결과물 도출에는 실패하였으나, 결과도출을 위해서 시도했던 접근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li> </ul> </li> </ul>

- **(평가결과)** 수행과정과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 등급을 부여해야 함 (시행령 제16조제2항)

- 보안과제 및 총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 단계 및 최종평가 면제 가능 (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16조제3항)

####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평가결과 통보)** 단계 및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음

#### 평가결과 통보 범위

- 평가결과 통보 대상
  - (선정평가) 과제수행을 신청한(탈락자포함)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 (단계·최종평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
- 통보 방법
  - 전자문서(공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내용증명, 통합정보시스템 등 보낸 일시와 받은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별 통보
- 통보 정보의 범위

	선정 여부	중단·계속 여부	평가 등급	종합의견
선정평가	○			○
단계평가		○	○	○
최종평가			○	○

※ 참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1.12월) p.15

#### 다. 특별평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거쳐야 함

〈표 2-7〉 특별평가 실시 사유

구분	사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평가 실시	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③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특별평가 신청	①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함
  -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 위원은 성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 재적 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

## 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 (단계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의 계속 수행 여부 등을 결정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의 보완·변경·중단, 지원 연구개발비 증·감액이 가능 (법 제12조제3항)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할 경우 중단 가능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 단계평가 결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제3항(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쟁방식 추진 등)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단 가능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 단계평가 결과 유사 연구성과가 개발되었거나 연구환경이 변화되어 연구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중단이나 연구개발목표, 연구책임자 등 변경 조치 가능
    - ※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나,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평가결과는 각각 도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등 후속 조치를 과제 공고 혹은 추진 초기에 명문화 하여 공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 가능 (법 제12조제3항)
    - ※ 후속 조치의 상세 내용은 부처·전문기관에서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과 결과가 모두 극히 불량한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법 제32조제1항제1호)

## 바. 이의신청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평가의 평가절차, 결과(종합의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이용

### 이의신청 범위

-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결정, 평가규정 및 사전에 확정되어 안내된 절차, 평가방식 (상대·절대·혼합, 서면·토론·발표, 블라인드, 평가단계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고,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 이의신청 처리 등이 완료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에 대하여 최종 확정

## 사.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li> <li>• 단계·최종평가(성과평가) → 실패 시 중단 및 제재조치 → 예외적으로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li> <li>• 단계·최종평가(성과 및 과정평가) → 평가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중단 가능 및 제재처분</li> </ul>

## 아. Q&A

### Q1. 단계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 이외에 과제를 중단할 수 없는지?

-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극히 불량 등급인 경우에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혁신법 제15조에 따라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할 수 있음

### Q2.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자체 소관 위원회가 있는 경우 동 자체 소관 위원회의 평가를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해당 위원회가 시행령 제27조의 평가단 구성 요건에 부합하고, 법 제15조의 특별평가 사유에 의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 명칭과 상관없이 법 제15조에 의한 특별평가로 인정할 수 있음

### Q3. 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인지? 또한 심의위원회 도입 취지는 무엇인지?

- 심의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로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등에 대한 기술적, 전문적인 사항은 평가단을 통해 판단하되,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라는 취지임
- 따라서 평가단의 평가결과만으로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평가단에 위임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Q4.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사업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은 심의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중앙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를 살펴볼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업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의 업무는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 Q5. 특별평가 이후 최종평가를 부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 특별평가를 거쳐 중단된 과제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단계평가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관 부처가 최종평가 별도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 Q6. 과제(활용)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의 단서조항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 연구개발과제 기획·분석·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 다만, 과제 담당관의 평가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부처의 운영 지침·규정 등에 과제 담당관의 평가 참여에 대한 사항(평가 참여 목적, 범위, 역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보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요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세부내용 및 제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단계보고서(이하 “단계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③ 법 제1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⑤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3.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활용 등 성과활용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⑥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가. 규정의 취지

-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제출기한을 제도화 함

## 나.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과제 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연차보고서,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차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

### 연차보고서 세부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각 단계가 끝난 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

### 단계보고서 세부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로,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최종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

### 최종보고서 세부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성과활용보고서)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중앙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 성과활용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을 사용

### 성과활용보고서 세부내용

-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 연구개발성과의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그 밖에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활용 등 성과활용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혁신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보고서의 제출 의무, 세부내용, 제출기한 등만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 의무화, 세부내용과 제출기한 명문화</li> </ul>

## 라. Q&A

**Q1. 단계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 제출하게 되면 단계평가가 차단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단계평가는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로 단계평가를 위해 단계보고서를 사전 제출하고, 단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연구개발계획 등을 수정·보완하게 됨
- 단계보고서에는 향후 과제 수행계획이 포함되며, 차 단계 연구수행을 위한 협약 변경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보고서의 제출은 단계가 끝난 날까지 완료함이 타당함. 이때 단계보고서는 단계평가 이후 수정·보완 된 최종적인 단계보고서로 보아야 함
- 한편 최종보고서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Q2. 최종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최종평가 시기 및 공개기한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는 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이때의 보고서는 최종평가를 위해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임
- 또한,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일 이후, 협약 종료일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마치고 평가결과에 따라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제5절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로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하려면 특허출원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명칭
  2. 연구개발과제의 식별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하는 연구개발과제 번호

3.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제 <2022. 6. 28.>

- ② 삭제 <2022. 6. 28.>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 ⑤ 삭제 <2022. 6. 28.>
- ⑥ 삭제 <2022. 6. 28.>
- ⑦ 삭제 <2022. 6. 28.>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1. 최종보고서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차한 경우
  7.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내
  2.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승인된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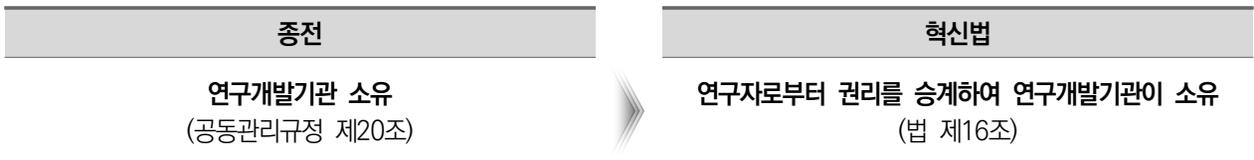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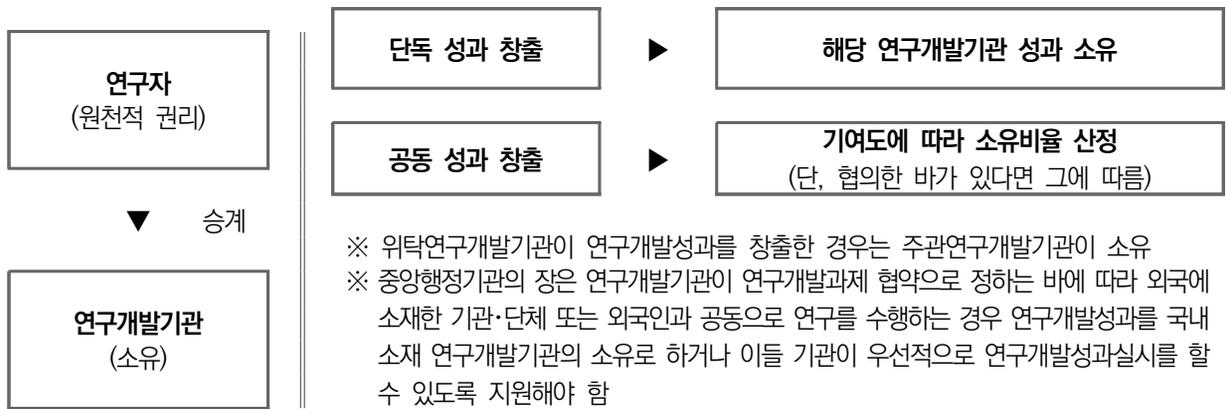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임을 명시하여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구자의 원천적 권리를 강조
- 주요 분야별 지정된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이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유지·보관 및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도록 명시하여 효율적 성과관리 추진

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원칙)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으로 하되, 해당 연구자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원천적 권리는 연구자에게 있음을 강조

〈표 2-8〉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공동연구) 성과창출 형태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성과창출 형태	성과 소유권(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 (위탁연구)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의 일부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예외적인 사유로 다른 기관에 맡겨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임
- (예외) 연구자 소유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경우 외에도 국가안보, 공익 등을 위해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

- ‘국가안보’, ‘공익목적 활용’,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제3항)**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한 후 법 제16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한편,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 \* 시행령 제33조 제4항(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 : 등록(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정보, SW, 표준), 기탁(생물자원, 화합물, 신제품)
  -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 필요(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을 통해 위탁 관리 가능

**라.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 **(원칙)**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 \*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혁신법 제17조제2항)를 지칭하며, 혁신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을 포함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 필요 등에 따라 3개월 이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외)** 비공개 사유에는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비공개 요청 사유에 따라 비공개 기간이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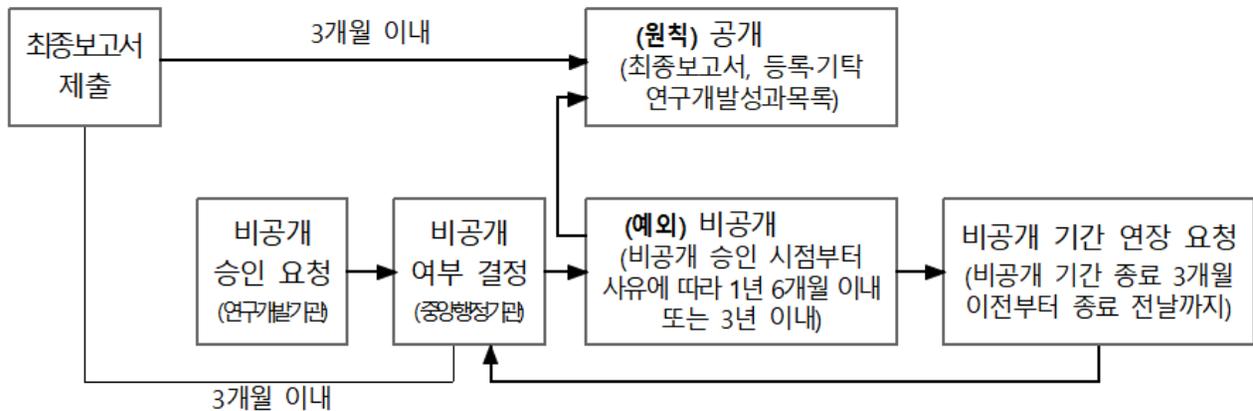
-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를 포함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 할 수 있음

\* <부록4> 매뉴얼 기준 서식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참고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li> <li>•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li> <li>•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항)</li> </ul>	3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li> <li>•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li> <l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li> <li>• 기타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li> </ul>	1년 6개월 이내

- 비공개 기간의 연장은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 기간이 끝나기 전날까지 최초 비공개 승인 요청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며, 비공개 요청 사유에 따른 비공개 기간 범위에서 연장 승인

<표 2-9>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



###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소유권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기관이 소유권을 가짐 (공동관리규정 제20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성과 소유 (혁신법 제16조 제1항)</li> </ul>
성과의 소유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 유·무형 여부, 과제 참여 형태에 따라 소유권 구분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2항)</li> <li>위탁연구기관도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1항, 2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참여형태,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에 따라 소유권 구분 (시행령 제32조)</li> <li>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이 소유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li> </ul>
연구개발 성과의 비공개 (비공개승인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공개 승인 연장은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가능 (공동관리규정 제18조 4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공개 승인 요청사유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비공개 기간의 연장 승인 (시행령 제35조 제4항)</li> </ul>

### 바. Q&A

#### Q1. 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성과에 지분이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 소유가 가능한지?

- 위탁연구개발기관과 공동소유는 불가능함. 성과에 대한 지분을 설정하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성과에 대한 지분은 상호 협약에 따라 소유가능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소유할 수 없으나,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였다면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음. 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1항)

#### Q2.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정할 때, 기여도 산정방법은?

- 특정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각 연구자의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여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여도가 같은 것으로 간주

#### Q3.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된 횟수가 있는지?

-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공개 기간 종료 전에 반드시 연장요청과 함께 추가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Q4. 연구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요청하고, 승인은 비공개 기간이 지난 후 받아도 되는 것인지?

-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 연장을 요청하고 승인도 비공개 기간 내에 받아야 함

## Q5. 위탁연구개발기관에서 구입한 기자재도 연구개발성으로 볼 수 있는지?

- 기자재의 종류에는 다양한 사안이 있을 수 있으나, 시행령 별표2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연구시설·장비구입·설치비 비목으로 구매한 연구시설·장비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으로 볼 수 있음
  - ※ '국가R&D사업을 통해 취득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의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등록·기탁 대상임
- 그 외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연구재료비 등으로 구매한 기자재(컴퓨터·복사기·사무용 가구·케이블·전선·레일·전산용품 등)는 연구개발성으로 보기 어려움\*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2021년):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연구시설·장비 대상에서 제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기자재가 연구개발성으로 인정받을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그 소유권이 있음

## Q6. A대학 과제를 B대학 소속 교원이 외부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해당과제의 성과물로 특허 출원 시 B대학 단독소유로 특허 출원이 가능한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달라짐
- B대학이 '국가연구개발 협약서' 상에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B대학이 그 성과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함. 반대로 A대학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B대학 소속 교원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은 가능함
- 만약, B 대학이 성과를 소유하고 싶다면 '국가연구개발 협약' 상 '연구개발기관변경\*' 절차를 거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위를 획득해야 함
  - \* 법 제11조 2항에 따른 협약변경

## Q7.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한편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은 혁신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에 협약 체결이 가능함

##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6.>
- 제36조(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확산·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력해야 한다.
-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 활용, 관련 정보공개·연계, 후속 연구개발 등을 통해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추적조사 실시 및 성과활용 조사·분석 근거 마련

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특별한 제약을 주지 않고, 최대한 원활한 성과활용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소유기관장은 연구개발성과 직접 실시와 기술실시계약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혹은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의무 존재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위해 동일과제에서 발생한 타 기관의 소유 성과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실시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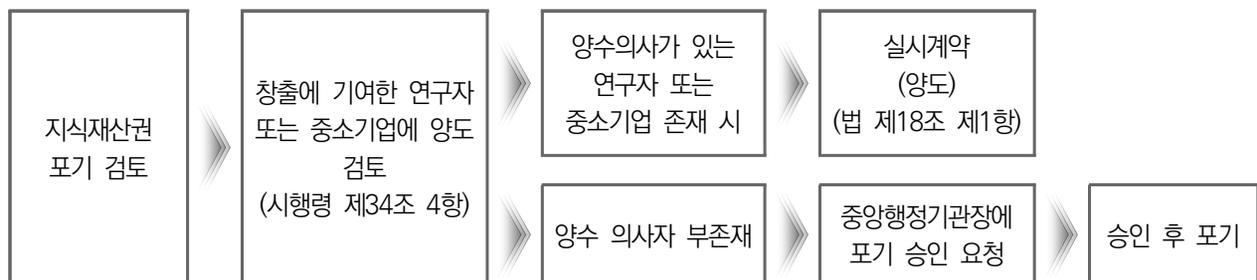
다. 연구개발성과의 공동 활용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

라. 연구개발성과의 포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하여야 함
  - 포기하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023.1.) 참고

〈표 2-10〉 지식재산권의 포기 검토 절차



### 마.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정보공개·연계,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장과 협의하여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의 세부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요구 → 성과활용보고서 제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 중앙행정기관 추적조사 실시
  - (세부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분석 실시

〈표 2-11〉 추적조사 세부내용 예시

항 목	세부 내용
계획 대비 실적	· 성과활용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성과가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는가?
성과의 객관성	· 성과활용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개발성과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연구개발성과 홍보 등 적절성	· 제시된 연구개발성과를 고려할 때 성과활용·확산을 위한 공개 및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과제 종료 후 후속조치의 적절성	· 후속 연구개발, 사업화 등을 위한 계획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가? ·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 납부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식재산권 포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포기 시 증빙서류 제출, 포기 시 소멸일 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6항)	· 등록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4항) (※ '23년도 변경사항)
성과의 양여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 권리 포기 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양여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5항)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성과유형 별 기술료 장수 등을 완료한 경우 성과권리 양여 우선적 검토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5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을 포기 하기 전에,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 검토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구분	종전	혁신법
기술실시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장·전문기관장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절한 기관에 양도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1조제5항)</li> </ul>	<p>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1항)</p> <p>* 연구개발성과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법 제2조제9호)</p>
기술실시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대상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1항)</li> <li>참여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부기준에 따라 참여기업 외의 자가 실시 가능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2항)</li> <li>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무형적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무형적 성과 소유기관의 장과 협의해 실시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8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거나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1항)</li> <li>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시행령 제34조 제2항)</li> <li>한 기관이 이미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 소유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장과 협의해 실시,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3항)</li> </ul>
추적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관 장에게 과제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 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 현황 조사를 위한 성과활용 조사를 위한 보고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공동관리규정 제21조 제3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 활용보고서 제출하게 할 수 있음</li> <li>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적조사 지원, 추적조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제공 가능 (시행령 제37조 제2항)</li> </ul>

## 사. Q&A

### Q1. 지식재산권 포기 시 공통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지?

-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동법 제17조의 업무 및 시행령 제 34조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한 승인을 요청
- 별도 양식 및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3.1.)」 참고

### Q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혁신법에서 연구개발성과 실시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하는 것은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

Q3.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연구개발 기관은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지?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시행령 제3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사항을 정할 수가 있음. 이는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포기가 아니기에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추진 가능

Q4. 여러 개의 과제에서 하나의 특허를 공동 창출하였으나, 특허를 포기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이럴 때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창출된 경우에는 그 중 기여율이 가장 큰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기여율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서 맨 처음 우선 출처 기재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
-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3.1)」 참고

## 제6절

## 기술료 징수·납부·사용

## 1. 기술료 개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2. 6. 29.>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삭제> <시행 2022. 6. 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3. 운영경비

-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2.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사용 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가. 규정의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여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하고, 연구개발 재투자율과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표 2-12〉 기술료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기관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전문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기관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형의 성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실시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나. 운영체제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
- 기술료 등의 납부(정부납부기술료)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
- 기술료 사용
  - 중앙행정기관이 영리법인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국고 또는 기금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사용



[그림 2-4] 기술료 제도 운영체제

## 2. 기술료의 징수·납부·사용

### 가. 기술료의 징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 연구개발성과를 제3자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를 제출

## 나. 기술료 등의 납부(정부납부기술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 (i) **매출액 보고** :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 (ii) **납부기간** : 최초로 매출액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
    - (iii)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i) **납부기간** :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
    - (ii)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 징수액에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또는 2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또는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 다. 기술료의 사용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외)은 다음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용 기준에 따라 사용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50%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5% 이상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 이상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 징수한 기술료(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는 참여한 연구자,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의 용도로 사용

##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납부액	<b>〈부처별 상이한 한도 적용〉</b> • 정액기술료 : 기업규모별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 경상기술료 : 정부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상이한 한도 적용	<b>〈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b>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 적용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b>〈부처별 상이한 요율 적용〉</b> • 정액기술료: 기업규모별 차등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 경상기술료 : 착수기본료 + 매출액 × 부처별 상이한 기술료 요율	<b>〈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b>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정부납부기술료(3자실시) : 기술료 징수액 × 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정부납부기술료(직접실시) : 수익×기술기여도 × 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감면기준	• 부처별 관리규정에 따라 재량에 의한 사안별 감면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악화 시 공통감면조항 신설

※ 납부한도 및 납부기준의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마. Q&A

**Q1. 기업 규모별 납부 한도 및 산출기준은 전 부처가 모두 통일된 것인지? 부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상한은 감면을 포함한 개념인지 궁금함**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및 납부기준(기술실시로 인한 수입의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을 적용함. 이 경우 납부액 감면을 포함해서 납부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으면 됨

**Q2. 기술기여도를 사전에 협약으로 약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을 위한 절차는 따로 있는지?**

- 기술기여도는 기업과 전문기관 등 연구현장의 행정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추후 사회경제적 상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함. 이 때 협약 당사자 모두가 협약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가능함

**Q3. 기업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주식 등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가능한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따르면 되고, 부처에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Q4. 경상기술료 요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존 정액기술료 한도(중소: 10%, 중견: 20%, 대: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납부액 산출기준은 기존 경상기술료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착수기본료를 폐지하여서 경상기술료 요율 증가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Q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하려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법은?**

- 혁신법 시행일('21.1.1.)이전에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체결되어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를 할 경우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 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나와 있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다만,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 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납부금액 등 기술료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을 경우 등은 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Q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3자실시에 의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경과조치 적용은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의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 시행 이후 3자실시에 의해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다만, 혁신법 시행 전 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

**Q7.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직접실시와 제3자실시를 동시에 하는 경우 정부납부 기술료의 상한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동시에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 방법을 따름
- 이때, 합산된 납부액은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를 넘지 않으면 됨

**Q8.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시점에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규모의 구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납부액 산출기준 및 한도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의 납부 산출기준 및 한도는 연구개발과제협약 시점의 시행령 제19조제1항 연구개발기관 구분을 기준으로 함

## 제7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분석·가공·배포 방안
  - 2.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 5.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 7.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을 공모하기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제46조(보안관리 조치)**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안교육 실시, 보안책임자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4.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5.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6.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7. 보안책임자 지정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려면  
그 시기·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실태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8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분실·훼손·도난
2. 제4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6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협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등"이라 한다)와 관련한 보안대책으로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4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6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장소·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9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I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II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III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1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47조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제1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15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영 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3조 및 제11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8조와 제9조, 제13조, 제15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권한의 대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부재 또는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조, 제8조 및 제9조, 제14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2조, 제13조, 제15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3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8조 (재검토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규정의 취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보안관리 조치의 내용을 보안교육의 실시 및 보안책임자 지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고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안과제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

##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 성과 등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1.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수집·분석·가공·배포 방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2.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조사·재발방지 방안
4.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5.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6. 보안교육 실시 방안
7.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과의 보안에 관한 협력 방안

####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1.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2.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3.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운영 방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1. ~ 3.의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정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련한 보안대책을 수립

\* 과기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교육부, 문화재청 등 8개 부처 공동 고시 (2022.6.20. 제정, 2022.6.20.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보안대책 수립 시 동 규정 별표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정하여야 함

**[별표]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4조 관련)**

1. 보안관리 체계

-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 나. 제16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 마. 영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 1. 다목에 따른 연구보안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5호의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의미함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4. 연구시설 관리

-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영
-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 5. 정보통신망 관리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의 설치·운영
-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 다.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 분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공모 전까지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 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하여야 함
    1.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2.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일반과제에 해당함

##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는 과제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 단, 외국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모두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의 판정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함
    -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호다목 해당여부는 보안과제 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으로 판단 가능

## 라.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 함
  -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 현황 관리
  - ③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요청

##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7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 [별지 제1호 서식]

(1쪽 중 1쪽)

## 보안서약서

##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 “\_\_\_\_\_”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 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개발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가 완료되거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또한 퇴직시 본인은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00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및 관련 법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인 성명 : \_\_\_\_\_ (인)

20 . . .

○○○ 귀하

- ④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 ⑤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⑥ 연구개발정보 처리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 ⑦ 보안책임자 지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및 보안관리 조치 실태를 점검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조치에 따른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안관리 실태 점검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을 하려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점검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함

**보안관리 실태 점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2조제1항 관련)**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마.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침해·유출·누설·분실·훼손·도난 또는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파손·파괴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알게 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1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지체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① 보안사고의 일시·장소
  - ②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 ③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알게 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조사를 실시하기 전 아래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함

- ①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 ②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 ③ 조사반 구성
- ④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제8절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활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초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가. 규정의 취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이 포함되었을 경우 그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그 세부근거를 마련 (혁신법 제10조)
- 구축예정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촉진을 통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계획 작성 (혁신법 제11조)

#### 나. 주요내용

- (선정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연구시설·장비 심의)

〈표 2-13〉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 **(과제협약)**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관련 세부내용 작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을 작성

※ 연구시설·장비에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

#### 다. 혁신법 전·후 비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시설·장비 타당성 평가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항 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2항 5호 시행령 제12조 2항 2호
협약 시 연구시설·장비활용 세부작성사항	관련 조항 없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2항 5호 시행령 제12조 2항 2호
연구시설·장비 정보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일반사항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시행령 제42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고시)	종전과 동일

## 라. Q&A

### Q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시설·장비 관리와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에는 과제선정 및 협약 단계에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검토'사항을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전주기 관리사항은 기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침내용을 따름

### Q2. 연구시설·장비 관리·활용 세부사항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및 '연구시설·장비 운영·활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 구축계획에는 장비명, 구축방식, 규격, 수량, 비용, 기간, 장소 등을 명시하고 활용 및 운영계획에는 명칭, 운영기간, 연간운영비용, 전담운영인력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Q3.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입비(예산요구서 기준)에 미반영 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원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입이 가능한 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2항 1호'에 의거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으로 구매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음
- 정부수탁사업으로 구매하는 연구시설·장비일 경우에는 사전에 과제계획서에 구매계획이 포함되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승인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없음. 구입예산이 기본사업비 내 연구시설·장비비 비목에 계상이 되어 있고, 변경사항에 대해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구입이 가능함

## 제9절

##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 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중략)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 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알림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예고하거나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할 때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영 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이하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참여하려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할 경우에 이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 제3조(동시수행가능과제수 확인 등)** ① 영 제64조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이하 "동시수행가능과제수"라 한다)를 제한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때에 연구개발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동시수행가능과제수를 초과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자와 협의하여 참여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 ③ 영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 제6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심의할 때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영 제64조제7호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대하여는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취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규정의 취지

-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촉진 등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를 제한
-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 수행 가능
- 다만,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

## 나. 주요내용

### ●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의 판단

- 3책5공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 여부는 과제의 소관 부처에서 결정
- 부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을 따르되, 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 ※ 부처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최대 5개 이내,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이내로 제한가능(예시: 교육부 일부사업에 대한 2책3공 적용)
- 추진계획 예고 및 과제·기관 공모 시, 영 제64조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야 함
- 위 규정은 훈시 규정이며, 만약 예고·공모 시에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과제 심의위원회의 의결, 협약 등을 통해 3책5공 적용 및 적용제외를 알려야 함

### ● 3책5공 해당여부 확인·조치

- (부처) 사업 추진계획 및 과제 공고 시 3책5공 적용·적용제외 여부를 고지하고, 과제 선정과정에서 참여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과제 참여현황 관리
- (연구자) 3책5공 해당 시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참여과제 조정

###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표 2-14〉 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 연구개발과제 단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과 맺는 협약체결의 단위임
  -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표 2-15〉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요건

시행령	고시
1)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b>종료예정 과제</b> 2) <b>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b> 과제 3) <b>과제 조정·관리</b> 목적의 과제 4) <b>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b> 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b>직접수행하는</b> 사업 과제 5) <b>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b> 과제 6)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b>기반구축**</b> , 대학재정지원, <b>인력양성, 학술활동</b> 등	-
7) <b>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 과제</b>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8) <b>과기자문회의 심의</b> 를 거친 과제	<b>정기</b> (매년 10월) 또는 <b>수시</b> (긴급 상황 발생시) 심의

\* (예시) 정부출연연, 과기분야 정출연, 특정연, 한국국방연구원 등

\*\* (예시) 시설·장비·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지자체 보조금사업 등

다. 경과조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21.1.1)을 기점으로 3책5공 적용여부가 변경되는 과제의 경우에 3책5공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

- (적용과제→적용제외과제의 경우) 연구자의 연구 참여 확대를 위해 21.1.1 부터 **적용제외 가능한 과제로 분류**

- ☞ 예 : 계속과제의 경우 적용과제에서 적용제외과제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3책5공 적용 및 적용제외 여부는 부처의 재량사항이므로 부처와 협의하여 공문 등으로 재량사항 확인 필요

- (적용제외과제→적용과제의 경우) 과제수행의 연속성 유지, 연구자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과제 종료(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종료)시까지 적용제외과제로 유지**

- ☞ 예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수행중인 과제는 혁신법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 과제 근거가 삭제되더라도 기존과 같이 3책5공 적용제외 과제로 분류

라.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중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동일한 과제 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3책5공 적용제외 여부가 비영리기관별로 달라질 수 있음

- 연평균 계산은 월할 계산이 아닌 회계연도 개수로 함

- ※ 2년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경우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2로 나눔

- (개편 이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완화를 통해 비영리기관의 중소기업과의 협력증진
- (비영리기관 범위)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라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말하며, 동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 (공동과제 의미) 중소기업 또는 상기 유형의 비영리기관 중 하나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함

#### 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 ●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고시 제6조)

- 영 제64조제2항의 적용제외과제 유형 외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제외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22.8.26)

##### ①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아래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3책5공 적용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3개 또는 연구자로서 5개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①, ②, ③, ④에 해당하는 '22년~'23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 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 ②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 ③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 ④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 ②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상관없이 '22년~'23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 ③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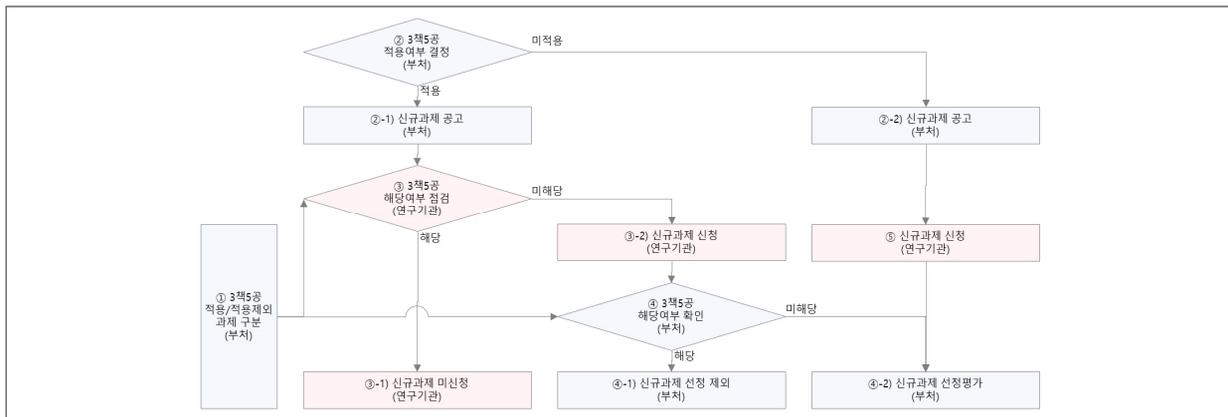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 (부진정 소급효) 현재 진행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IRIS에서 공개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

###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32조, 고시)	혁신법 (법 제35조, 영 제64조,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의 준수사항</li> <li>• 적용제외 : 강행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li> <li>-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연구개발과제</li> <li>-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li> <li>-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li> </ul> </li> <li>- 해당연도 정부출연금미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li> <li>-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책5공 원칙하에 정부의 재량사항</li> <li>• 적용제외 : 가능규정</li> </ul>
〈신 설〉	〈유 지〉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자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li> </ul>
〈신 설〉	〈삭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22.12.11. 개정사항)</li> <li>- 기반구축사업, 학술진흥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중 연구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li> <li>-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유형으로 부처가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li> </ul>

### 〈 3책5공 제도 운영 절차 〉



- ① (부처) 3책5공 적용/적용제외 과제 구분 : 부처는 소관 계속과제별로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구분
- ② (부처) 3책5공 적용여부 결정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
- ②-1) (부처) 신규과제 공고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할 경우 공고 시 3책5공 적용과제임을 명시
- ②-2) (부처) 신규과제 공고 : 부처는 소관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고 시 3책5공 적용제외과제임을 명시
- ③ (연구개발기관) 3책5공 해당여부 점검 : 연구개발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점검
- ③-1) (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미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신규과제 미신청
- ③-2) (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하려는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규과제 신청
- ④ (부처) 3책5공 해당여부 확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의 3책5공 해당여부를 확인
- ④-1) (부처) 신규과제 선정 제외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할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서 제외
- ④-2) (부처) 신규과제 선정평가 : 부처는 신규과제를 신청한 연구자가 3책5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자를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포함
- ⑤ (연구개발기관) 신규과제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3책5공을 적용하지 않는 신규과제에 대해 과제 신청

## 사. Q&A

**Q1. 종전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 단위가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였는데, '21년부터는 무엇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임
- 참고로,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세부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함

**Q2.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간주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총괄 주관기관만을 의미하는지, 세부 주관기관도 포함되는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산정 기준은? (일부 부처의 통합형과제 등의 세부주관, 세부총괄 등의 구분)**

-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산정 기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의 단위가 되는 연구개발과제임
- 따라서 종전의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은 현행 혁신법에서는 모두 협약의 주체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었다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산정됨
- 그러나 종전의 총괄주관기관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고, 세부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을 맺을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만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산정되며, 종전의 세부주관기관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로 산정됨

**Q3. 연구개발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기준(3책5공) 내에서 제2항에 따라 부처가 소관 과제의 3책5공 적용 또는 적용제외 여부를 결정함

**Q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3책5공 적용이 제외되는지?**

-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에 해당하더라도 부처가 3책5공을 적용제외 하지 않는 경우에는 3책5공이 적용됨

**Q5.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서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지?(모든 과제는 3책 5공을 적용함)**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유형이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어 소관 부처가 해당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제외 할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 단, 수행 중인 과제도 소관 부처의 재량에 따라 1책 혹은 1공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Q15 답변 참조)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의 재량 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Q6.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됨
- 따라서 종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에 해당함
- 다만 종전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 협약을 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자에 해당함

**Q7.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종전과 같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에 해당함

**Q8.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도 3책5공이 적용되는지?**

- 종전과 같이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음

**Q9. 학생연구자도 3책5공을 적용받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64조의 연구자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 14호 학생연구자도 포함되므로 시행령 제64조의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받음

**Q10.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 '22년도의 경우 소부장·코로나19·탄소중립·국민건강 및 안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로서 3책5공을 최대치로 하고 있는 연구자가 '21년 신규과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가능함. 만약 1책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3책5공 적용 가능함. 또한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부처에서 3책5공을 인정한 과제도 적용제외 가능함
- '22년도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22.8.26)는 IRIS 내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 에 게시

**Q11.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3책5공 적용이 완화되었는데, 그 사유는?**

-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Q12.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내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이면,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 본문에 따라 다른 기관의 연평균 연구개발비 규모에 상관없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함
-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경우에도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3책5공 적용이 가능함

Q13. 비영리기관(대학, 출연연, 특정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중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변경)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연평균을 계산할 때 월할 계산이 가능한지?

- 연평균 계산은 회계연도 개수로 하며, 월할 계산하지 않음
- ※ (예시) 1차년도 2억원(4개월), 2차년도 5억원(12개월), 3차년도 2억원(8개월)인 경우, 연평균 정부출연금은 9억원/3(회계연도)=3억원

Q14. 중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22.8.26)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IRIS 내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에 게시

Q15. 하나의 과제에서 3책은 적용하고 5공은 적용하지 않거나, 3책은 적용하지 않고 5공은 적용할 수 있는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소관 부처가 재량으로 가능함

Q16.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 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 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Q17. 3책5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3책5공이 법령상 연구자의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협약으로 정한 경우 혁신법 제32조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특별평가에 따라 과제가 변경·중단된 경우는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Q18.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규 과제는 새로 공모되는 과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과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의 입장에서 신규로 참여하는 과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매뉴얼에서 말하는 신규 과제는 참여연구자가 신규 참여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모 등을 통해 새롭게 선정되거나 지정되어 추진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의미함

Q19.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의 경우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기관이 여러 사업으로부터 수주하는 총 연구개발비 평균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청하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 기관에게 할당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준은 해당 기관이 여러 사업으로부터 수주하는 총 연구비의 연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상 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연평균을 의미함
- 혁신법 매뉴얼 은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 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명시하고 있음

Q20.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의 과제 수 제한을 적용 받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2.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작성·기록·관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 분야 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삭제
6. 삭제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역할과 책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보급·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보관·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③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연구노트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자 등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자가 해당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대상과 범위 등에 제한 없이 열람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노트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에 연구노트의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기관·단체에 누설·유출·양도·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노트 관리 실태점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기관·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로 **‘연구노트’**를 작성·관리해야 함

### ① 주체별 역할과 책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노트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 지침(고시)**」를 제공
- (연구개발기관) 연구노트 작성·관리 등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운영, **연구자 통제** 목적으로 연구노트 활용 금지
- (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

### ② 연구노트 작성

- (특례) 연구개발과제(인문·사회·수학·이론과학 등)·연구개발기관(개인사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등 작성으로 대체 가능
  - ※ 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보고서 작성으로 대체 가능
  - ※ 협약사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노트를 논문, 번역·출판 원고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경우, **해당 논문 및 번역·출판 前 원고의 제출로도 연구노트 대체 가능**
  - ※ 협약서에 직접 명시가 어려운 경우, 특례 적용을 명시한 별도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 가능
- (형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서면·전자노트 및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 가능
  - ※ 연구개발기관은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수립
- (단위)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 가능

### ③ 연구노트 권리 소유 :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관계없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④ 연구노트 보관·관리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중단**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하고, 연구노트를 **30년간\*** 보존

- \* 연구개발기관 자율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적용 가능(단축 가능)

⑤ 연구노트 열람·사용·공개

- (열람) 연구개발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며,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가 열람을 요구한 경우 제한 없이 열람권 보장
- (사용) 연구노트를 작성한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지재권 출원·보호 등에 활용 가능하되, 무단으로 유출·양도·매매 금지
- (공개) 연구개발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공개 가능

⑥ 연구노트 폐기 :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기관 내 자체규정에 따라 폐기 가능

- 과학기술 분야 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제공하거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여야 함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	연구노트의 연구개발성과 유형	• 유형적 성과(명시적)	• 유형·무형의 성과(해석상)
	연구노트 작성 특례	• 과제 협약에 따라 작성/미작성 여부 결정	• 과제 협약*에 따라 보고서로 대체 여부 결정 * 기본사업의 경우 자체규정
	연구노트 작성 단위 (모호한 기준 명확화)	〈신 설〉	• 연구자별 작성 또는 참여연구자 공동작성
	연구노트 요건 (과도한 기준 완화)	• 서면연구노트 또는 전자연구노트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다양한 형식 가능
과학기술 분야 외 연구개발과제		〈신 설〉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제공하는 지침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기록·관리

## 라. Q&amp;A

## Q1.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모든 과제에 대해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하나?

- 연구노트 별도 작성 또는 보고서로 같음 여부는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제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으로 정함

## Q2.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한 연구노트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지?

- 연구노트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연구개발성과로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한 원칙이 적용됨
- 즉, 연구노트 지침(고시) 제9조제1항은 연구노트 권리의 소유에 대한 기본 원칙을 표현하였고, 제2항은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도 법 제16조에 따른다고 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따름.
- 따라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작성한 연구노트의 소유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Q3. 연구노트 지침상 보존기간 30년은 장기인데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특허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함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20년이고 1차례 연장기간 5년, 과제종료 이후 한참을 지나 특허분쟁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30년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 자율적으로 과제의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등 달리 정할 수 있음

## Q4. 연구노트 요건이 변화한 이유가 있는지?

- 연구노트 형식을 기존 서면·전자노트에서 영상, 음성, 사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완화하여 작성부담을 줄이고, 연구노트의 요건을 연구개발기관이 특성에 맞게 자체지침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권익 보호 및 향후 활용을 위해 기록일과 기록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 Q5. 연구노트 보관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는데 연구노트 보관·관리하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

- 연구노트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담당부서 지정·운영이 필요함
- 연구노트 보관·관리의 어려움 경감 방법으로는 전자노트 활용, 자체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단축 및 보존 가치가 없는 연구노트 폐기, 다수의 담당부서 지정 등이 있을 수 있음

## Q6. 연구자가 참여 중이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게 되거나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연구노트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 이러한 경우에도 담당부서에 연구노트를 제출해야 함

## Q7.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비로 연구노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 근거하여 연구노트 관련 구입비용, 사용비용, 유지보수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
- 해당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비로, 연구개발과제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가능

## 제10절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1. 연구윤리 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 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
2.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3. 이해 충돌 예방 및 관리
4.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5. 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6. 그 밖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가. 규정의 취지

- 연구진실성, 연구부정 대응에 관한 종전 연구윤리 규범을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규범으로 범위 확장
-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 자정작용 촉진을 위해 연구윤리 확보 책임 명확화

## 나. 연구윤리 개념

- (종전)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방지를 위한 개념으로 국한
- (변경) 연구부정 외 책임 있는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과정 전반에서 고려하고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범주 확장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관리, △인간·동물연구 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
  - 그 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따른 사항 포함 가능

## 다. 연구윤리 확보 책임 주체 및 의무

- (주체)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책임주체는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이며, 정부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확보 활동에 관해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관련 현황을 점검하는 지원주체
- (주체별 의무)
  - (연구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을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함
  - (연구개발기관) 확장된 연구윤리 범주에 관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을 마련하고, 소속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확보를 지원해야 함
    - 연구진실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이해 충돌 관리, 인간·동물연구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연구부정 등 부정행위의 검증·조치에 관한 자체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게 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과 분리(제정 형태는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제정 가능)

##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윤리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윤리 확보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윤리 확보 = 연구진실성 확보 +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이해 충돌 관리 + 인간·동물연구 윤리 +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등</li> </ul>
책임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명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연구개발기관</li> </ul>
책임주체(연구자·연구개발기관)의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 -</li> <li>(연구개발기관) 연구부정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자) 연구윤리 준수 및 진실·투명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li> <li>(연구개발기관) ①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 마련, ② 소속연구자 등의 연구윤리 확보 지원</li> </ul>

## 마. Q&A

### Q1.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혁신법 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연구윤리 자체규정은 혁신법 시행령 제58호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또한, 연구개발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준수를 관리하여야 하고, 더불어 소속연구자와 지원인력 등에 대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추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할 계획임

### Q2.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의무가 법에 명시됨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함
- 또한, 연구자는 소속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윤리 자체규정도 준수하여야 함

## 2.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 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보고의 내용·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정(이하 이 조에서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방법
2.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3. 부정행위 증명을 위한 조사의 결과 통보·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가. 규정의 취지

- 국가R&D 수행에 관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 강화
-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의 객관성 강화

나.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을 통한 검증·조치 범위 확대
  - (종전)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만을 조사·검증 대상
  - (변경) 연구부정 + 그 외 모든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모두)를 조사·검증 대상으로 함
    - 종전 대비, 확대된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해서도 연구개발기관의 검증·조치 자체규정 마련 필요
-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권한 강화
  - (종전) 연구개발기관이 스스로 조사·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검증 실시 가능
  - (변경) 자체 검증 불가, 조사결과의 타당성 부족 등 정부(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접조사 가능
    - \* 연구개발기관이 스스로 조사·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
    - ※ ‘연구비 용도 및 기준 외 사용’에 따른 부정행위는 해당 사유만으로 정부(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가능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
    - ※ 혁신법 시행 이후, 과도기적으로 우려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 자체규정 미비와 이로 인한 검증·조치 기능 공백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대로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필요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조사·검증 대상 범위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부정(위조·변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 그 외 모든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모두)
정부(전문기관) 권한	• 연구개발기관이 스스로 조사·검증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에만 가능	• 자체 검증불가, 조사결과의 타당성 부족 등 정부(전문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능

라. Q&A

**Q1.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기관)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규정을 마련하기 전 또는 마련 중에 발생하는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 중인 경우는 혁신법 제31조 제3항 제1호의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고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검증·조치 직접 실시를 요청해야 함

### 3. 제재처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기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기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 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기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 및 공개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이하 “참여제한”이라 한다)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 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⑧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옹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⑨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 사건의 당사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에게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제8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2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법 제3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 결정을 말한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 ②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공개해야 하는 제재처분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및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연구자 식별을 위하여 발부하는 국가연구자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 및 주소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①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영 제61조제7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 가. 규정의 취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책임성 확보,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대응을 위해 부정행위의 금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의 내용·절차를 규정

나. 제재처분의 주체·대상 및 사유

- (주체) 제재처분의 주체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제재처분의 최종 권한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음
  - 다만, 일부항목\*은 혁신법에 따라 연구관리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음
  - \* 제재처분평가단 구성·운영, 연구개발비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미납 시 독촉·징수(혁신법 제22조 제1항)
- (대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며, 제재처분평가단은 사안에 따라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처분 대상자를 선정해야함

〈표 2-16〉 제재처분의 사유

제재사유		요약		
1호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과정결과불량		
2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3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		
	〈 혁신법 제31조11항 각호 〉		-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적을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위조변조표절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적을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성과소유위반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대책 위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국내 국내 누설유출 국외 국외 누설유출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신청 부정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수행 부정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그 밖의 연구부정 (포괄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조사방해행위	

제재사유		요약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생명윤리 위반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연구실 안전 위반
4호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포기
5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술료 미납
6호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금 미납

\* 관련법령 :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호

#### 다. 제재처분 절차

〈표 2-17〉 제재처분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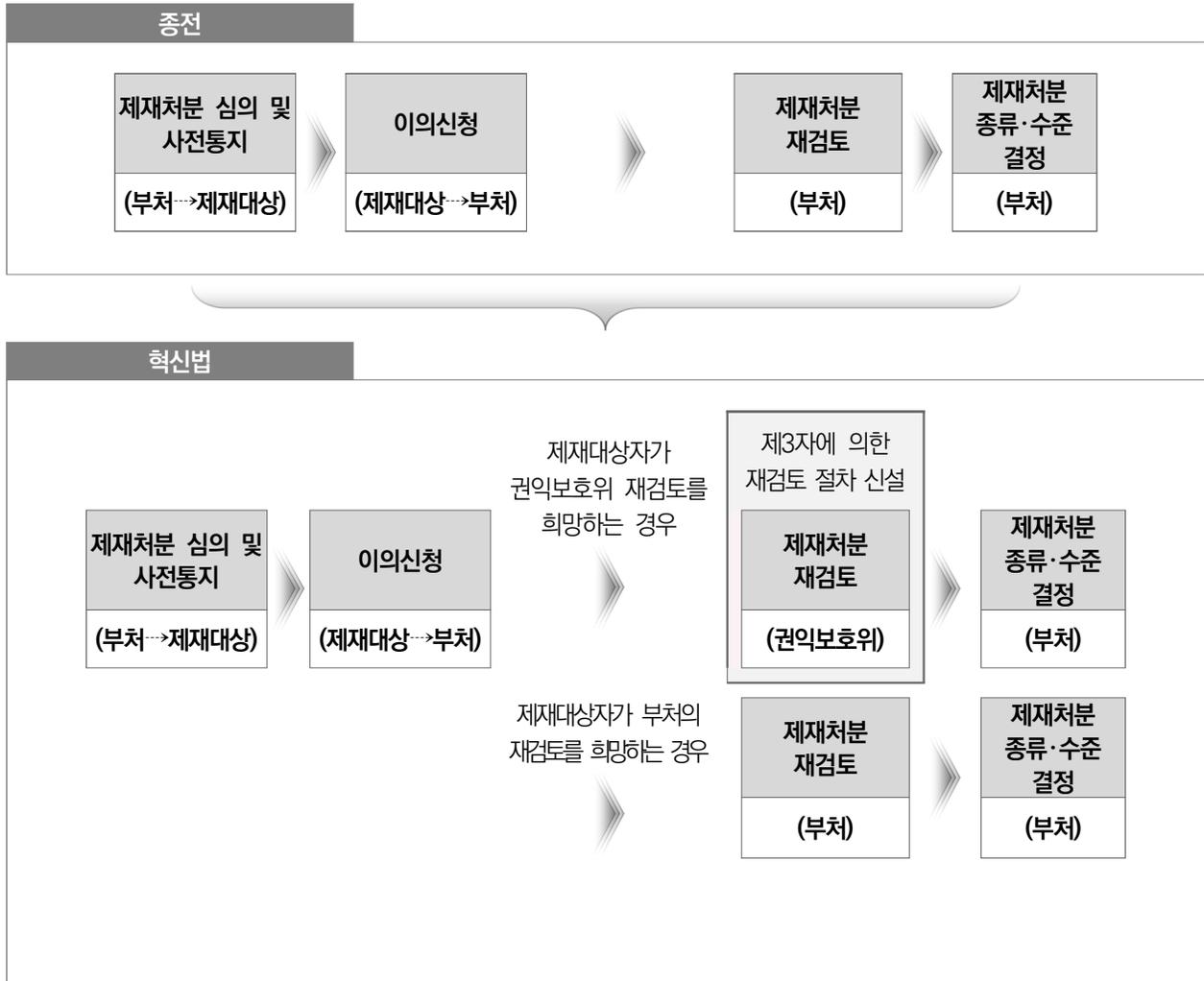


- **(제재사유 발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과제관리 과정(평가단계, 정산단계 등)에서 적발, 외부기관(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 등)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해 적발
- **(제재사유 조사/검증)**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행위(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를 조사·검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혁신법 제31조 제2항,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조사·검증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혁신법 제31조 제3항 각호, 혁신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 각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정행위를 조사·검증할 수 있음
-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함
  - 각 부처는 기술전문가,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해야 함
  - \* 특히 제재 심의 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전문가를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

- **(제재처분 사전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관련자에게 각각 개별적으로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함(혁신법 제33조 제2항 각호)
- **(재검토)**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제재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
  - 재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대상자가 위원회 검토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여야함
- **(제재처분 확정통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었던 경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재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로부터 재검토 요청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각각 통보
  - 제재처분의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 통보한 내용을 모두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중 5년 이상의 참여제한 또는 3배 이상의 제재부가금 처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여야 함(혁신법 제33조 제7항, 시행령 제62조)
- **(납부 및 사후관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함(시행령 제63조)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제재처분효력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일부 정부수탁과제에 한정</li> <li>• (활동)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한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 직접수행사업, 출연연 기본사업까지 포함</li> <li>• 국가연구개발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 제한(위원회 위원 활동 등 포함)</li> </ul>
제재처분 사유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결과) 연구결과 불량</li> <li>• (용도의 사용) 연구비 용도 위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과정 + 연구결과 모두 불량</li> <li>• 연구비 용도 + 기준 모두 위반</li> </ul>
제재처분 시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행위 적발 시 별도의 시효 없이 제재처분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제종료(활동종료) 10년 이후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 도입</li> </ul>
제재처분 등록·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제재처분 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제재처분 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일정 처분 이상의 대상자는 정보공개 실시</li> </ul>



[그림 2-5]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 마. Q&A

#### Q1.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 적용 기준은?

- 혁신법 부칙 제5조에 따라, 법 시행일('21.1.1)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혁신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적용
- 단, 혁신법으로 달라진 제재처분의 절차(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절차 신설)에 관하여는 법 시행일('21.1.1) 이후 부처에서 사전통지하는 제재처분부터 적용

#### Q2. 제재처분 상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자 1인을 기준으로 참여제한 총 10년, 제재부가금 500% 이상의 처분은 할 수 없는지?)

- 제재처분의 상한은 '1회 처분 시'를 기준으로 적용함. 동일한 연구자에 대하여도 각 개별 처분을 기준으로 상한 기준을 준수하면 됨

Q3.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한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함

Q4.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납부 시까지' 인데, 이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 참여제한 기간의 합산 시, '기술료 미납', '회수금 미납'에 따른 '납부 시까지'는 합산에 포함하지 않음

Q5.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할 때에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검토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해야 하는 것인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바로 통보해도 되는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심의해야 한다면 재검토 요청 처리기간인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검토결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수용하여 그대로 통보하는 것 모두 가능함
- 처리기간(30일) 준수와 관련하여, 타 위원회 및 유사사례를 살펴본 결과 처리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보아 기간을 도과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징계의결기한 등과 관련하여 기한 규정을 훈시적 규정으로 보고 처리기간을 도과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함

Q6. 부처별 개별규정에서 허용했던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

Q7. 참여제한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수행 중이었던 과제에도 참여할 수 없는지?

- 참여할 수 없음.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이후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함

Q8.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 중으로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상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혁신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이 직접 검증·조치를 실시해야 함







## Ⅲ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 제1절 연구개발비의 구성·지급·이관

#### 가. 규정의 취지(공통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기관별 재원 구성과 지급 절차 및 방법, 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비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

#### 나.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부담기준

-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
  - 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 ① 비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단,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② 영리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표 3-1〉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영 제19조제4항 외 과제	영 제19조제4항 해당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	○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 (시행령 제19조)

-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영 별표1)와 같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자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본권 '참고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참고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3.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① 비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원 또는 부담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제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 다. 연구개발비 지급

### ●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 일괄지급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건별지급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별로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지급

### ●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방법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보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유형 현황'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①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비영리기관에 대하여는 일괄지급(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기타 비영리기관은 건별지급)하고,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건별지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은 일괄지급)함

※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과제는 건별지급 가능함

② 통합RCMS를 사용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건별 지급함

〈표 3-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통합Ezbaro	일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 일괄지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인 경우(지방 공기업 포함): 일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 건별지급	• 공기업이 아닌 경우 : 건별지급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건별지급 가능				
통합RCMS			건별지급	

- 연구개발비 납부 및 지급 대행(사용기준 제2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납부 받는 업무와 지급하는 업무를 연구비관리전담기관으로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통합Ezbaro 운영)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통합RCMS 운영)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비관리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라. 연구개발비 이관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타 연구개발기관·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직접비 : 직접비 잔액
- 간접비

① 비영리기관 : 직접비 사용비율 적용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산출식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간접비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② 영리기관 : 간접비 잔액

〈표 3-4〉 연구개발비의 이관 방법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직접비	직접비 잔액	직접비 잔액
간접비	<p>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                      간접비총액*-(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 간접비 총액은 연구개발비 이관시점까지 수령한 간접비금액을 말함                 </p>	간접비 잔액

##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부담비율이 다양하게 정해짐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로 부담비율이 단순화됨
중견기업	• 60% 이내 정부지원	• 70% 이내 정부지원
공기업	• 별도 명시되지 않음	• 50% 이내 정부지원
현물부담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 도입비에 한정 • 세목별 최대 비율을 한정	• (좌동) • 항목별 최대 비율 삭제

## 바. Q&A

###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계속과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의 최댓값이 상향조정된 것임
- 종전의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Q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각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연구개발기관별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총액) : 10억원
  - A기관(대 기 업) : 5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5억까지 A기관에 지원)
  - B기관(중견기업) : 3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1억까지 B기관에 지원)
  - C기관(중소기업) : 2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1.5억까지 C기관에 지원)

### 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Q4. 연구개발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 협약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부처(전문기관)와 협의(승인) 하에 협약 변경 필요
- 부처가 시행령 별표 1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전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후 통보하여야 함

### Q5.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Q6.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의 부담비율은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음

**Q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할 경우 간접비 적용 방법은?**

- 연구개발비를 이관하는 비영리기관은 수정직접비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사용금액을 정산하고, 이관 받는 기관은 이관 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이관시점\*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산출함

\* 이관시점은 연구개발기관이 변경된 날(협약변경의 효력발생일자)로 함

〈연구개발비 이관 시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른 간접비 조정방법(예시)〉

- 이관하는 기관 인정 간접비(A) = 직접비 사용금액 × 간접비 고시비율
- 이관 받는 기관 인정 간접비(B) = (협약시점 직접비 - A기관 직접비 사용금액) × B기관 간접비고시비율
- A + B < 협약시점의 간접비: 직접비로 전용
-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접비 증액 승인 불필요
- A + B > 협약시점의 간접비: 협약시점의 간접비로 인정. 단,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내 증액 가능 (사전 승인사항)

- (이관하는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낮을 경우) 이관시점에 이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간접비비율로 적용 후, 남은 금액은 직접비로 전용

- (이관 받는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을 경우)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잔액을 이관하는 것이 원칙. 단,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내 증액 가능(사전 승인사항)

**Q8.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를 구성하여야 함

-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Q9.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현물은 언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 협약 시 계상한 현물부담금액 총액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현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 부담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현물부담 확인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은 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계상하여야 하고,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함. 따라서 만약 연구개발기간 동안(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연도별 현물부담부족액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 가. 규정취지

- 연구개발비 항목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연구개발비를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 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직접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관련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항목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li> <li>*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li> <li>• 주류 등 유흥성 비용</li> </ul>
중복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한 비용</li> <li>•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한 비용</li> <li>•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한 비용</li> <li>•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해당 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li> </ul>
내부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li> <li>-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로 발생하는 비용</li> </ul> </li> <li>* 총괄 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li> <li>•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li> </ul>
예외(계상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li> <li>•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li> <li>-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li> </ul> </li> </ul>

구분	계상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li> <li>-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li> <li>-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li> <li>•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li> </ul>
공간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li> </ul>

● 현금·현물 계상기준

-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

① 직접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은 구입가로 현물 계상
  - ※ 구입가 : 자산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다만,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는 사용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③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3-6〉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항목별 제한기준 판단 시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	○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 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 미지급인건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로서 중앙행정기관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1항)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 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제1항)	○
간접비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제9호)	X
연구수당 불인정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p 초과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7항)	X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이 50%이하 시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X

#### 다.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인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 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인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료 및 저술출판비용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 가능함
    - \* 연구개발협약 종료일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 사용금액을 입력하여야 함
    - ※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발생한 논문게재료 및 저술출판비용은 간접비(연구지원비 중 연구활동지원금)로 사용 하여야 하나, 간접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사용 가능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 라.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특례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사용 기준 [별표1]을 따름

##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검수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매 시 검수 의무 없음(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6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포함) 구매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부과 (사용 기준 제22조제3항)</li> </ul>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차)</li> <li>•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연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li> <li>•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단계 또는 최종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부 비용에 한해 사용가능 (사용 기준 제22조제4항)</li> </ul>

## 바. Q&A

### Q1.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

-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舊 세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개선함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함
  -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에 명시하고,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 한편,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자율성이 높아진 것에 걸맞게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연구개발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Q2.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 필요함

### Q3.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한 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에서 "연구공간"의 의미는?

- "연구공간"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조(정의)의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범용성 사무공간은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추가적인 연구공간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함

##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가. 사용용도

#### 인건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나. 사용기준

#### ● 공통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9조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상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산출한 인건비계상률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기관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 인건비 구성항목

- ①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총액
- ②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표 3-7〉 인건비 관련 법령 및 규정

구 분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계상불가

-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검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불가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우측의 가능 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시 가능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위 공통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

**[참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 관련,  
부처(전문기관)별 운영 내용**

(\* 사업의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에 따라 운영내용이 달라지므로, 소관 부처 및 전문기관 확인에 유의바랍니다.)

□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6조제2항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이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범위는 [별표 3]에 따르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5]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로 신청하여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지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중기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9.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및 조정 / 다. 비목별 산정기준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련규정(요령, 관리지침 등)에서 정한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
    - \* 예)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 그 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원문은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업안내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함

□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제2항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 관련)
-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 국가 전략적인 목적으로 다수의 부처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 해수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연구자
    - \* 지식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2.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채용 참여연구자
  3. 그 밖에 장관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원문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농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43조제2항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원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농진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II.연구개발비의 산정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 \* 기술분야가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이거나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원문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기상청(한국기상산업기술원)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9조제4항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6호 관련)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출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으로 평가단에서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식서비스 분야는 신청서류를 토대로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 산정 불가

※ 위 내용은 해당 부처(전문기관)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이며, 사업별 특성 등에 따라 공고문 등을 통해 추가로 인정하는 범위가 안내될 수 있음

※ 위에서 안내되지 않은 부처(전문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문, 별도 문의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인건비 계상한도

〈표 3-9〉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
학생연구자	월 단위 100% 이하				

※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월)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월)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 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 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 공통사항

-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 단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 연 급여(사용기준 제39조제3항)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 및 기타비영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제외)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매년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인건비계상률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표 3-10〉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1

구분	수탁사업	기본사업	합계
계상	130%	0%	130%
지급	100%	0%	100%
판단	130%(계상)-100%(지급) = 30% 초과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130%)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100%)의 차액(30%)이 기본사업 출연금인건비계상률(0%)을 초과하여 불가)		

〈표 3-11〉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2

구분	수탁사업	기본사업	합계
계상	60%	70%	130%
지급	60%	40%	100%
판단	130%(계상)-100%(지급) = 30% 초과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130%)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100%)의 차액(30%)이 기본사업 출연금인건비계상률(70%) 미만으로 가능)		

-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 대학 :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함
  - ①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②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함
  -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상기의 증명자료 중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대신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	• 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사용 기준 제39조제1항〉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존과 동일)</li> </ul>
인건비계상률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li> <li>*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li> </ul>
계상률 관리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구소 포함) : 연 급여 총액</li> <li>그 외 기관 : 월 급여 총액</li> </ul>
계상률 입력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li> </ul>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li> <li>(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 (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li> <li>*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존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li> <li>(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이내(출연연 기본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li> </ul>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동시수행 과제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 불가(3책5공 준수)</li> <li>(입력) 통합이지바로 0% 입력불가(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li> <li>※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계상률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 (3책5공 준수)</li> <li>(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 입력됨</li> </ul>
인건비 현금지급 (영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li> <li>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li> <li>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li> <li>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위지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li> <li>-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li> </ul> </li> </ul>	<p>〈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li> <li>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 제외)</li> </ul> <p>〈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li> <li>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li> <li>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li> </ul>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 기준 별지3호 서식)에 따라 구분 관리 필요</li> <li>〈사용 기준 제65조제6항〉</li> </ul>

## 마. Q&A

###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 Q2.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Q3.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 Q4.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8조·제57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관리되어야 함

### Q5.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자원(민간과제 등)으로 100% 확보된 경우에는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민간재원으로 전액 확보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인건비 계상이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처에서도 이사회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Q6.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

**Q7.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전문기관)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 다만,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Q8.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9. 연구개발기관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 B의 2021년 6월 급여총액이 10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제외),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이 20만원일 경우에, C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4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제외)과 2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을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에 총인건비계상률은?**

<b>총전(참여율)</b>	➤➤	<b>현행(총인건비계상률)</b>
$\frac{60}{120} = 50\%$		$\frac{40}{100} = 40\%$ <p>*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총당금 20만원은 총인건비계상률과 별도로 인건비에서 계상</p>

**Q10.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가.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나. 사용기준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강사·겸임 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과제의 참여연구자 등록 필요**
-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은 ①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②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③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④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
  - ※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제2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서식)을 활용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 원 이상, 석사과정 220만 원 이상, 박사과정 300만 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 통합과정생이 있는 기관(대학)은 통합과정생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보장, 처우 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공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는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중 선택하여 지급 가능

**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3〉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공통)

-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 대학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타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시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
	<신 설>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 '23년도 변경사항 -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변경됨)
연구참여 협약 체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을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  ※ 해당 학생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학생인건비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  협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월 단위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  협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신 설>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박사 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로 지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 마. Q&A

**Q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자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Q2.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급 가능함

**Q3. 졸업예정자가 졸업하는 월의 연구참여기간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졸업일 이후에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로 작성 필요
- 다만 졸업월의 말일이 아닌 일자에 졸업하더라도 해당 월 학생인건비계상률 100%로 계상하여 졸업월 말일까지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즉, 졸업월의 학생인건비를 졸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Q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자체 인정 기준(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 등)에 따라 연구생으로 보고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학생연구자로서 연구 참여 및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Q5.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Q6.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음
-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Q7.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는 인건비가 총인건비계상률 100%(소속 대학 계상기준 100%)에 달하면 추가 연구 참여 시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 참여 가능함

**Q8.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

-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자가 수급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원 소속 대학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생은 휴학한 대학을 원 소속 기관으로 봄)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고시 제39조제10항 및 제40조제6항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분	원 소속 기관(A대학) 지급액 (계상기준 350만 원)	타 기관(B대학) 지급액 (계상기준 300만 원)	가능 여부	사유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350만 원	0원 (계상률 0%)	가능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이므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300만 원	5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300만 원	0원 (계상률 0%)	불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타 기관 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250만 원	7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0만 원	1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50만 원	2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00만 원	25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30만 원	32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0원 (계상률 0%)	30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불참	연구개발과제 불참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상태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연구개발과제 불참	35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양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관련)**

※ 연구개발기관장(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의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대체 가능, 타 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학적 변동 시 변동 사항을 기관장에 알려야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 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 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 ~ 20 . .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협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 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 (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비적용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 ~ 20 . .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 3. 기타 협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 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3.3월 기준)

※ 기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관련 내용은 본권 제3장 제18절 혹은 별권1 참조

- 총 65개 기관 (대학 58개, 출연(연) 3개, 특정(연) 4개)

※ 가나다순으로 정렬

구분	기관명	
	연구책임자단위 (51개)	연구개발기관단위 (14개)
대학 (58개)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동아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송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가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밭대학교*
출연(연) (3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특정(연) (4개)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2023년 1월 1일 신규 시행

\*\* 2023년 1월 1일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시행

##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가. 사용용도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함
  - \* 구입가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 ①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③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④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연구시설·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①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 ②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간접비 사용용도)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연구시설·장비비 매뉴얼 부분 참조)
  -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 \* 구입가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다.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4〉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자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시설·장비도 입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li> <li>•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li> <li>• (시설·장비구축과제 또는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23년도 변경사항)</li> </ul> <p>※ 긴급 상황 및 시설·장비구축과제의 경우에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p>

## 마. Q&A

**Q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 기간은?**

-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1호] 연구개발계획서에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총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임차비용으로 적용하여야 함.

**Q2.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 금액은 3천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여러 대 구매 또는 임차하여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